



202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작성요령 및 설립신고방법 확인〉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 고객지원 → 동영상 안내 → 설립신고 안내

법례

이 편람의 본문에서 사용하는 법, 영, 규칙, 연구소, 전담부서는 각각 다음을 의미함

- 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12p 참고
- 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p 참고
- 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5p 참고
- 신고요령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143p 참고

CONTENTS

I 제도 소개

1. 신고제도 개관	6
2. 신고대상	9
3. 인적요건	13
4. 물적요건	25
5. 준수사항	31

II 신규설립 안내

1. 신고제도 개관	36
2. 설립신고절차	54
3. 수리 및 인정	59

III 변경신고 안내

1. 변경신고대상	66
2. 변경신고절차	73
3. 신고 및 수리	77

IV 사후관리

1. 연구개발활동조사	82
2. 인정요건 유지 확인	103
3. 인정취소	107

V 부록

1. 관계법령	112
2. 신고제도 연혁	164
3.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시행 및 확대	171
4. 서비스 분야 R&D 정의 및 사례	173
5. 보전산지 전용 추천	212
6. 주요지원제도	217

I

제도 소개



1. 신고제도 개관
2. 신고대상
3. 인적요건
4. 물적사항
5. 준수사항

1 신고제도 개관

1) 제도취지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

* 서비스분야 : 영 [별표 1]을 제외한 모든 업종(10p 참고)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영 제2조 제5호)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981년	1991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6년
연구소	53	1,201	9,070	21,785	35,288	37,631
전담부서	0	49	1,361	7,797	20,169	23,201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1월
연구소	39,313	40,399	40,750	42,155	44,068	44,903
전담부서	25,167	26,299	28,367	29,864	31,518	33,202

2) 법적근거

- 법 제14조의2 및 영 제16조의2

3) 신고주체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4) 신고절차

-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접수(www.RND.or.kr) / 先설립 後신고

5) 처리기간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의 법정기한은 10일 이내

6) 운영기관

- 법 제20조 및 영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 수행

7) 인정요건

-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함
 - 학위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영 <별표 1>을 제외한 모든 업종)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함
 - 대·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구분		내용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연 구 소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 이후 3년까지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전담부서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부대시설은 필수사항 아님)	

* 단,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 분	대 기 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 농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① 좌동 ②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 ③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인 사람	① 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연 구경력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물적요건은 적절한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갖추어야 함(규칙 제2조)
 - 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함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으로 신고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담부서(연구소는 제외)

〈연구공간 기준〉

-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단, 다음의 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서 50㎡를 초과하는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음(영 제2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으로 신고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담부서(연구소는 제외)

8) 준수사항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함(영 제17조 제1항 제4호, 신고요령 제8조)
-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음

9) 사후관리

- 신고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관리사항 확인 등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은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신고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상세사항은 “III. 변경신고 안내” 참조)
- 신고요건 미달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됨(상세사항은 “IV. 사후관리” 부분 참조)

2 신고대상

1)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등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등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법인
- 「향교재산법」에 의한 종교법인 등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대상 기업조건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조직도상 기업의 하부조직으로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활동 이외에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조직인 생산,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시종업원을 보유하여야 함
※ 위탁생산의 경우에는 위탁생산협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생산, 판매, 관리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2) 신고가 가능한 연구개발활동 범위

-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영 <별표 1> 제외)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은 영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 연구개발활동 정의(영 제2조 제5호)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 제외)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 영 <별표 1> 유흥 등 관련분야 제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 과학기술 분야

- 제품개발에 해당하는 건설, 금속, 기계, 생명과학, 섬유, 소재, 식품, 전기전자, 화학, 환경, 산업디자인, 기타 등의 분야
 -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제품디자인: 대량생산되는 산업체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
- 포장디자인: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

❖ 서비스 분야

- 유통 등 관련분야 6개 업종(영 <별표 1>)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 신고 가능

〈서비스 분야의 구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36~39
도매 및 소매	45~47
운수	49~52
숙박 및 음식점	55~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8~63
금융 및 보험	64~66
부동산 및 임대	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74~76
교육서비스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86~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예)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예)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 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예) LED의 실내조명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 활동
 - (예)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
-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전담부서가 외주 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Q & A

1.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의 이익 및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직전 단계까지의 연구개발활동을 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창출 목적으로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연구소/전담부서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한국연구산업협회(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연구소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전문연구사업자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3.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어떻게 인정받는지, 과학기술분야와 다른 요건이 있는지?

☞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인정요건을 갖추어 온라인을 통하여 설립신고를 합니다. 신청분야 선택시 서비스 또는 과학기술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분야는 주업종에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인정요건은 대부분 동일하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3

인적요건

I

제
도
소
개

1) 연구전담요원 수

- 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대기업은 10인, 중견기업은 7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함
-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영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전담부서	5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기업규모 무관)
	5명 이상
	중견기업
전담부서	7명 이상
	대기업
전담부서	10명 이상
전담부서	1명 이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단,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연구원·교원 소속 연구기관 및 대학의 범위(규칙 제2조 제7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16개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임
-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임
 -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겸직 허용됨
-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중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임
 -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이면 인정됨
- 중견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으로, 유효기간 내여야 함
- 대기업은 위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으로,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함
- 해외소재 연구소(해외연구소)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함

Q & A

1.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퇴직) 또는 겸직허가서(휴직, 겸직)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외소재 연구소 설립에 있어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 ☞ 해외 소재 연구소는 최소 5명 이상의 전담요원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및 파견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조건은 국내와 동일합니다.

3. 중기업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 ☞ 작년과 올해분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상으로는 “중기업 유예”로 체크하고, 유효기간은 올해분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구전담요원 자격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산업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경우
 - 자연계의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서비스 분야에 한정)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단, 3년제 전문학사인 경우 연구경력은 1년 이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가능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4대 사회보험 등으로 회사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

❖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규칙 제2조 제6항)

- 4대보험 미가입자
-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 다만, 야간과정을 수학하는 경우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 과정으로 연구 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해외사무소 파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 시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술고문 등 상시근로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영역이 명확한 감사(단,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 경우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능)
 - 기술자문위원,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규칙 제2조 제3항)

-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 사범계열의 경우는 해당 전공이 속하는 계열별 구분에 따름(학위명 확인)
- 예) 영어교육학과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 수학교육과는 자연과학계열 전공자로 분류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의 계열구분 기준〉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 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 계열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계열	공학 등
예·체능 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 계열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연구소/전담부서 설립관련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 계열로 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관련 법령	법령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자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1922년 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965년 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1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동등자격을 보유하고 연구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가능(3년제 졸업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가능

❖ 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요건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함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는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또는 기술사의 순서로 등급이 구분됨
 - 기사 이상은 학사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산업기사는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 연구전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
 -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

❖ 외국인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연구업무가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전담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이 됨
 - 연구전담요원이 되기 위한 입국목적별 비자는 주재(D-7), 기업투자(D-8),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거주(F-2), 결혼이민(F-6) 등이 있음
 - 외국인등록증은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며, 외국인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음
-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생산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기업규모 변경에 따른 전담요원 자격 유지(중소기업→중견기업)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당시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요건*으로 연구전담요원에 등록되어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는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후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동등자격을 보유하고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서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Q&A

1.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 ☞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창업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필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기업 요건: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보유 및 기업대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2. 대학 4학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3.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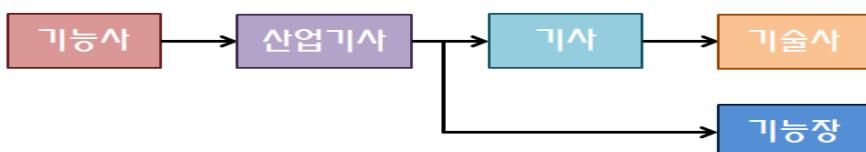
- ☞ 주간대학원에서 수학중인 경우는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며, 수업이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사람의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간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4.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전담부서인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부에서는 이공계 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인문계과정을 이수한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지?

- ☞ 이공계 학사과정을 졸업하였으므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해당자는 석사졸업이 아닌 학사졸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5. 기능장은 전담요원이 가능한지?

- ☞ 기능장, 기술사는 전담요원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격 순서는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또는 기술사 등의 순입니다.



Q & A

6. 고졸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지?

-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갖고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인정합니다.

7. 마이스터고·특성화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연구경력은 20년 이상 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지?

- ☞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는 경력 유무과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합니다.

8. 계약직 사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지?

-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향후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하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또는 산업기사 자격)와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으로 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동일회사 연구경력도 가능한지?

- ☞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이라면 동일회사의 연구경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후에는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10. 중소기업의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 ☞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하여 전문대 졸업과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이 되려면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의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신고)이 가능한지?

-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입대예정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신고)이 가능합니다.

12. 회사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담요원이 해외로 연수를 가거나 해외사업으로 인해 파견을 가게 될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한지?

- ☞ 6개월 이상 해외 연수나 파견의 경우에는 전담요원으로서 근무 할 수 없으며, 변경신고를 통해 전담요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Q&A

13. 연구개발경력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 이전에 근무하였던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이름, 소속, 기간, 업무 등 표기)이며, 소속부서 또는 담당업무에서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어야 연구개발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14. 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하려는데,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 ☞ 복수전공은 2개의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2개의 학위가 부여된 것이며, 부전공은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도 이수하였으나 주전공에 따른 1개의 학위만 부여된 것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확인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표기된 취득한 학위를 확인하셔서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5. 석/박사 수료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수료자의 경우 최종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 학위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이전 학위(석사수료의 경우 학사학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3) 연구전담요원 자격의 예외적용(서비스 분야 등)

- 산업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전공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한데, 이러한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에는 사업개요서 및 기자재,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분야가 산업디자인분야 중 제품, 포장디자인 분야임이 확인되어야 함
- 서비스 분야의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 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요건(규칙 제2조 제4항)

- 기업의 주업종이 영 [별표 1]의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서비스분야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는 경우 자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이 됨
-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중소기업의 경우

-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등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주업종 판단기준〉

-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의 업태구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 영 [별표 1]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세무서 발급)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 영 [별표 1]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 요건(규칙 제2조 제4항)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디자인의 산업디자인 분야인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함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산업디자인 인정범위는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를 준용함
 - *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 산업디자인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함
 - * 과학기술분야 산업디자인은 제품 및 포장디자인에 한함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

종류	정의	인정범위
제품디자인	대량 생산되는 산업체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	인정
포장디자인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	
시각디자인	주로 평면적인 시각정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인쇄물, 영화, TV 등 시각매체를 통해 전달	불인정
환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건축물디자인, 조경디자인 포함	
서비스디자인	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Q&A

1.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이 산업디자인분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 신고하는 기업의 주생산품과 신고 시 작성한 연구개발활동개요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의 주요업무, 전문연구분야, 연구과제 등과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기업의 주 생산품으로 디자인분야 연구소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산업디자인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의 디자인만 가능한 것인지?

- ☞ 산업디자인의 연구소의 경우,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의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 제품디자인 : 대량생산되는 산업체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
- ※ 포장디자인 :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

4) 기타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인력은 아니며, 자격조건은 없으나 연구전담요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소/전담부서에 상시 근무하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을 지정하여 신고하는데,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전임 또는 겸임을 구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타기관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가 없으며, 연구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보조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요건은 아님
 -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제품 제작, 시험 등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을 겸직하는 직원은 연구보조원이 아님

❖ 연구관리직원

-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연구기자재 및 부품 등의 구매, 연구행정 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가 없으며,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관리직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요건은 아님
 -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회사내의 일반 관리직원은 연구관리직원이 아님

❖ 연구소장

-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이 연구개발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할 경우는 “겸임”으로 명기하여야 함
 -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됨
 -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겸임”으로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소장은 회사 임직원(기업대표 포함)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중 최선임자 또는 대표이사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함

※ 단,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수와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연구소장 겸임을 인정하고 있음

Q & A

1.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는지?

- ☞ 연구소장의 경우 회사 내부 종업원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여 “전임”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에 포함이 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른 회사의 임직원(계열사 포함)을 연구소장에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연구소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귀사의 임직원이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A

3. 대학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서로 겸직할 수 있다.)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학교수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연구소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을 연구소장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연구소장이 가능한지?

- ☞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연구소장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5. 연구소/전담부서에 연구전담요원 외에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 ☞ 연구전담요원만 있어도 가능하며,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구전담요원과 동일하게 연구소 안에서 상시근무하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

6. 연구소장의 전임, 겸임 기준은 무엇인지?

- ☞ 연구소장은 전임 또는 겸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전임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할 경우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임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 ☞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연구보조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연구관리직원은 연구행정, 연구지원업무 등 연구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1) 연구공간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①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②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m^2$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공간의 설치 기준

- 연구소/전담부서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의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소/전담부서가 회사 사무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방의 벽면을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전담부서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벽체가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쉽게 철거가 가능한 파티션, 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별한 경우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이 $50m^2$ 이하인 연구공간에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의 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공간의 면적 확보 기준

-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연구공간이거나 또는 뚜렷한 사유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인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회의실 형태란 설치된 책상이 회의용인 라운드 테이블이고 개인별 사물이나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개인별 칸막이 등이 없이 완전 개방된 공간을 말함

❖ 연구소/전담부서 현판 부착 의무

- 연구소/전담부서 입구에는 해당 장소가 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가 독립건물일 경우 건물 입구, 1개층 전체를 사용할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층의 출입구,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입구에 각각 부착하여야 함
 - 회사 출입구나 건물 안내판에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부착하였다고 하여도 독립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독립공간, 분리구역)의 연구소/전담부서는 반드시 해당공간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은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나무 등 내구성 있는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함
- 현판의 연구소/전담부서명과 인정받는 명칭은 동일하여야 함
- 연구소와 전담부서간 혼동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기술연구소, R&D센터, 연구원, 연구센터 등 가능
 - 전담부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 연구부, 개발실, 개발부 등 가능

❖ 연구소/전담부서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법 제14조의4 제2호)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복층, 베란다의 임의 용도전용, 무허가 컨테이너 구조물, 조립식 건물 등 포함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등 주거전용 건축물

Q & A

1. 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연구소 내부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인정가능한지?

- ☞ 연구용 기자재가 연구소로 신고된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자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연구소가 협소할 경우 별도의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실험실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실험실뿐만 아니라 연구원 사무공간도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무공간을 타 업무부서와 같이 사용한다면 인정 불가합니다.

3. 사무실과 실험실 등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로 등록할 공간이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각 면적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가 다른 경우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각각 상시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물적요건에 따라 연구소 독립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 ☞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으며, 주거(주택)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이후 연구사업 활성화로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이 상당수 충원이 되어 연구 공간 면적에 비해 인력이 무리하게 많은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연구개발활동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한 후 면적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간을 확장하거나 기존의 장소와 다른 소재지에 독립된 공간(부소재지 1개소 추가 가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6. 전대차계약을 한 공간에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할 수 있는지?

- ☞ 소유주의 동의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전대차를 인정하여 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7. 연구소/전담부서 공간이 벽체로 분리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독립공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 ☞ 출입문이 있어야 독립공간으로 물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A

8. 허가받은 가건물일 경우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가건물이라면 연구공간으로 신고가능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물내 복층공간에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이 가능한지?

- ☞ 연구소/전담부서로 사용할 공간이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나지 않은 복층(상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층 중 하층(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10. 연구소/전담부서의 사방이 투명한 유리 재질의 벽면으로 막혀있는 경우 인정 가능한지?

- ☞ 신고할 연구공간의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구가 있다면 벽면 재질과 무관하게 독립공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11. 대학교 내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 ☞ 기업에서 신고할 연구공간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배타적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증빙될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12. 연구소/전담부서의 현판 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 ☞ 현판 제작시 재질은 내구성 있는 반영구적 재질(아크릴, 목재, 철재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셔야 합니다.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능합니다.
-

2)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내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는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 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부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시설은 생산시설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제조, 생산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기자재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기자재 및 보유 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신고한 연구개발활동개요서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인용 컴퓨터(PC), 사무책상, 팩스, 복사기, 모니터 등 사무집기와 서버, 허브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일반적인 개인용 PC가 아닌 고성능이나 특수용 PC 및 개발용 프로그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됨
- 범용으로 사용되는 보급용 측정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측정장비로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부대시설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활용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정한 면적일 것
 -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
 - 연구소/전담부서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Q&A

1.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기자재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연구시설명세서 상에 PC, S/W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PC, S/W(MS오피스, 한글 등)는 연구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분야가 정보처리, 디자인, 제품설계 등에서 사용되는 특수목적용 PC나 S/W(캐드, 일러스트 등) 등을 활용할 경우 연구기자재로 인정이 됩니다.

3.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연구소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공간도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시공간은 연구소/전담부서 부대시설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이 회사의 일반 상품이나 제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연구소/전담부서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4. 연구소/전담부서를 주/부소재지로 신고할 경우 연구기자재는 어떻게 되는지?

- ☞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는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에 각각 설치되어 연구개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5. 연구소 부대시설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 ☞ 부대시설은 연구원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의실, 화장실, 기자재창고가 있습니다. 회사 내 타 인원과 공동사용하는 시설/장소는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준수사항

- 신고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기업은 연구활동 전담자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별도로 상시 보유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동일 소재지에 연구시설 및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위치해 있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서 신고할 수 있음(전담요원 수 합산은 가능하나, 주/부소재지 모두 연구시설(공간/기자재)이 확보되어야 함)
- 주소지가 다르거나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음

❖ 연구전담요원 등의 겸직 금지 의무(법 제14조의4 제1항)

-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음
- 단,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이사의 경우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규칙 제2조 제6항 제2호 다목)
 - 창업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기업 요건으로 환원(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보유 및 대표 이사의 연구전담요원 배제)

❖ 연구전담요원의 근무지 요건(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2)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하여야 함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함
- ※ 단,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원은 연구시설 내 상주 근무하여야 하며(주, 부소재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소재지 당 최소 1명 이상), 연구원의 연구시설 외 근무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활동 외 종사자 상시 보유 의무(영 제17조 제1항 제1호)

- 연구소/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개발활동 실적 제출 의무(영 제17조 제1항 제4호)

- 연구소/전담부서 보유기업은 매년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함

❖ 소재지에 대한 준수사항(영 제17조 제2항)

- 연구소/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함. 단,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음. 이 경우 각 주소지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주/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함

〈연구소의 주소지가 1개 이상의 지역일 경우 설치 방법〉

- 각 주소지의 연구소가 모두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2개 방안 중 선택
 - 각 주소지의 연구소를 독립적으로 인정받아 1개 기업이 2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거나, 2개 소재지를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하여 1개의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소지가 2개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함
- 각 주소지가 독립공간과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연구전담요원 수가 인정요건에 부족한 경우
 - 2개 주소지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통합하여 연구소 인정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경우에는 2개 소재지를 주소재지, 부소재지로 하여 1개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음(2개 주소지까지만 통합 가능)
 - 2개 주소지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통합하여도 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소지가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따라 주소지를 2개를 통합하여 1개 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주소지는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함
- 연구전담요원 근무지와 다른 별도의 장소에 실험실 등 독립된 공간에 연구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2개 소재지(주소재지, 부소재지)로 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주소재지는 연구전담요원 근무지이고 부소재지는 실험실이 있는 장소임(단, 부소재지에도 최소한 연구전담요원 또는 보조원 1인 이상이 상주하고 있어야 함)

❖ 1개 소재지에서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 인정받는 경우

- 전문연구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체계에서 중분류(첫째 2자리 수)가 다른 경우임
- 각 전문연구분야가 모두 연구소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2개 방안 중 선택
 - 각 전문연구분야를 독립적인 연구소로 인정받아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연구소를 보유
 - 각 연구개발활동 분야를 통합하여 1개 연구소로 보유
- 각 전문연구분야가 독립공간과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연구전담요원이 부족한 경우
 - 각 연구개발활동 분야를 통합하여 1개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각 전문연구분야를 전담부서로 인정받아 2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보유

❖ 건축물에 대한 제한

- 연구소/전담부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음(법 제14조의4 제2호)

Q & A

1. 연구소/전담부서 공간이 한 곳에 위치하지 않고 인접한 두 곳에 소재한 경우 신청방법은?

- ☞ 이러한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 연구소/전담부서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적요건은 주/부소재지를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며, 물적요건은 각각 총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각 소재지에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기준요건을 갖추고 소재지별로 연구소/전담부서를 따로 설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요건은 합산할 수 없으며,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각각 총족시켜야 합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를 주/부소재지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의 소재지에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동시에 총족해야 하는지?

- ☞ 주/부소재지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의 공간에 대해 물적요건인 연구시설은 따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 수는 합산해서 인적요건이 총족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3. 주/부소재지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주 또는 부 소재지에 연구관리직원만 상시 근무하여야 되는지?

- ☞ 주/부소재지로 나누어 신고할 경우 각각의 소재지에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연구관리직원만 상시 근무한다면 해당 소재지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4.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 전문연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재지 내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연구개발활동 결과를 활용하는 생산, 영업,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1인 이상)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재택근무 요건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연구원이 연구시설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고서상으로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를 '부'로 선택하고, 재택근무 해당 인력 및 재택근무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택근무 등을 수행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신청 공간 내 좌석 및 사무기자재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 재택근무 증빙서류 :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업 내부 시행문, 재택근무 시행 결재 서류, 재택근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III

신규설립 안내



1.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2. 인정신청절차
3. 수리 및 인정

1 신고제도 개관

1) 제출서류

- 연구소/전담부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조직도, 도면 및 연구소/전담부서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련 추가서류(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분야의 연구소, 벤처확인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등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제출서류

-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서식을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정서식인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은 온라인에서 작성
 -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에서 4가지 서류작성 → 구비서류 첨부

* 기업용(범용, KOITA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기업)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중 조직도(회사 및 연구소), 도면(총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 연구소 관련사진은 별도로 작성
-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해당서류 제출

❖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해당기관 경력증명서(퇴직) 또는 겸직허가서(휴직, 겸직)
 - 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국세청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서류 제출

〈설립신고 서류〉

연구소		전담부서
지정 서식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연구기자재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연구기자재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구비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연구소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연구원·교원창업 창업 겸직허가서(해당학교, 연구소, 재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사본(중견기업에 한함)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보고서(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회사 조직도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전담부서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연구원·교원창업 창업 겸직허가서(해당학교, 연구소, 재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사본(중견기업에 한함)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보고서(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좌동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는 제출대상 아님)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고졸자, 전문학자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항)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2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은 사실확인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이용 미동이나 별도 요구받는 기업에 한해 제출

Q & A

1. 회사에서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고자 하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조세, 관세 혜택 및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시 가점, 전문연구요원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연구소/전담부서는 필수조건 또는 가점의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소 설립신고 업무를 산기협 외 다른 기관에서도 진행하는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업무는 관련 법령에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대기업이 서비스 분야 연구소로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시되,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 서비스 분야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할 경우 주업종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개인기업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제51호 서식에 기신고된 내용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 명판 날인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지정서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4.>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전화번호 이메일			
	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 년	명	⑨ 개업 연월일(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⑪ 기업부설 연구기관명	⑫ 설립 연월일			
	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성명 전화번호	직위	생년월일 근무 형태 []전임 []겸임	
	⑭ 소재지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⑮ 신청분야	[]과학기술 []서비스				
기업 부설 연구 기관	⑯ 연구분야 []건설 []생명과학 []식품 []환경 KSIC:	[]금속 []섬유 []소재 []전기전자 []산업디자인	[]기계 []소재 []화학 []기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운수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KSIC:		
	⑰ 주 연구 내용				
	⑱ 연구개발 인력	연구전담요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관리직원 명	⑲ (연구기관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⑳ 연구공간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소유 [] 임대	건물 m ²	[] 소유 [] 임대	[] 소유 [] 임대	m ²
㉑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	
	연구시설비			백만원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II
신규
설립
안내

(뒤쪽)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삭제 <2022. 8. 4.>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총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기자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기자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⑯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10. 삭제 <2022. 8. 4.>	
	11.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합니다)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합니다)	
	13. 삭제 <2022. 8. 4.>	
	14. 삭제 <2022. 8.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를 적습니다.
 - ⑦의 "매출액"란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⑪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⑫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를 적습니다.
 - ⑬의 "신청분야"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합니다.
 - ⑭의 "연구분야"란은 ⑯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KSIC 종분류 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⑯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 ⑮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⑯의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⑰의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⑲의 "연구공간"란에는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구분한 경우
- ※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 ⑲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3.\)](#)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주요 업무

II

신규
설립
안내

② 전문 분야

③ 신청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 적인 연구과제	연도	년도 월 ~ 년도 월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방법

- ◇ ①의 "주요 업무"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②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적습니다.
- ◇ ③의 "신청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청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210mm × 297mm(백지 80g/m²)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3. 3.>

연구기자재 현황

① 일련번호	② 품명	③ 수량	④ 설치 부서 / 설치 위치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기자재 현황 작성방법

◇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안에 있는 기자재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만을 기입합니다(사무용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의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의 통신수단 및 헤드폰 등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툴로 사용되는 전용프로그램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①의 "일련번호"란에는 연구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1, 2, 3, 4 … 를 의미합니다).

◇ ④의 "설치 부서/설치 위치"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세부 부서가 없으면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연구기자재 현황]의 작성 장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성지 80g/m²]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4.>

[] 기업부설 연구기관
[]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현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④ 구분	⑤ 일련 번호	⑥ 직위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속 부서	⑩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⑪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⑫ 병적 사항	⑬ 발령일	⑭ 신규 편입 여부	⑮ 연구시설 내 근무 여부	
⑯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전임 [] 겸임	[] 여부	
⑰ 연구 전 담 요 원												
⑱ 연구 보 조 원												
⑲ 연구 관 리 직 원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II
신규
설립
안내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 ① 및 ⑦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 ② 및 ⑯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③ 및 ⑯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⑩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 ⑯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⑩의 "최종 학교" 및 ⑪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경우에는 "최종 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 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 ⑯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 ⑯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 ⑯의 "신규 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⑯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를 표시합니다(자택 등 연구시설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에 표시합니다).
- ⑯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장"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만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4.>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⑤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 년	명	⑨ 개업 연월일(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⑪ 연구개발부서명	⑫ 설립 연월일			
	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⑭ 신청 분야	[] 과학기술 []건설 []금속 []기계 []생명과학 []섬유 []소재 []식품 []전기전자 []화학 []환경 []산업디자인 []기타 KSIC:	[] 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운수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KSIC:		
	⑯ 주연구내용				
⑰ 연구개발인력	연구전담요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관리지원 명	⑱ (연구개발부서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종
⑲ 연구공간	[] 건물 전체 [] 소유 [] 임대	[] 독립공간 [] 소유 [] 임대	[] 분리구역 [] 소유 [] 임대		
⑳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II

신규
설립
안내

(뒤쪽)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삭제 <2022. 8. 4.> 5. 회사 조직도 1부 6.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총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7.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⑩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합니다) 1부 8. 삭제 <2022. 8. 4.> 9. 삭제 <2022. 8. 4.>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p>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p>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p> <p>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p> <p>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 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p> <p>4. ⑦의 "매출액"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p> <p>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p> <p>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p> <p>7.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p> <p>8. ⑫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p> <p>9. ⑬의 "소재지"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p> <p>10. ⑭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택합니다.</p> <p>11. ⑯의 "연구 분야"란은 ⑭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분야를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KSIC 중분류 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⑯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p> <p>12. ⑯의 "주연구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p> <p>13. ⑰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p> <p>14. ⑯의 "연구기자재"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p> <p>15. ⑯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각각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p>※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p> <p>16. ⑯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유형"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p>		
신청서류 처리절차		
<pre>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필요 시 현지 확인)] C --> D[결재] D --> E[인정] E --> F[인정서 발급] </pre> <p>신청인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p>		
210mm × 297mm(백상지 80g/m ²)		

Q & A

1. 연구소/전담부서가 위치한 건물이 대표자 개인명의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간을 어떻게 신고 하는지?

- ☞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건물로 처리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가건물로 처리하므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I

신규
설립
안내

2.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상의 연구소/전담부서명과 현판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명과 현판명이 일치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3.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서류작성 요령과 절차가 있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에 모든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 상의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재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는 先설립 後신고 체계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일은 회사 내부적으로 설립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연구공간 면적 기재시 건물형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 ☞ 건물형태란의 “건물전체”는 건물전체가 연구소/전담부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일부분만 연구소/전담부서로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에는 “분리구역”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첨부서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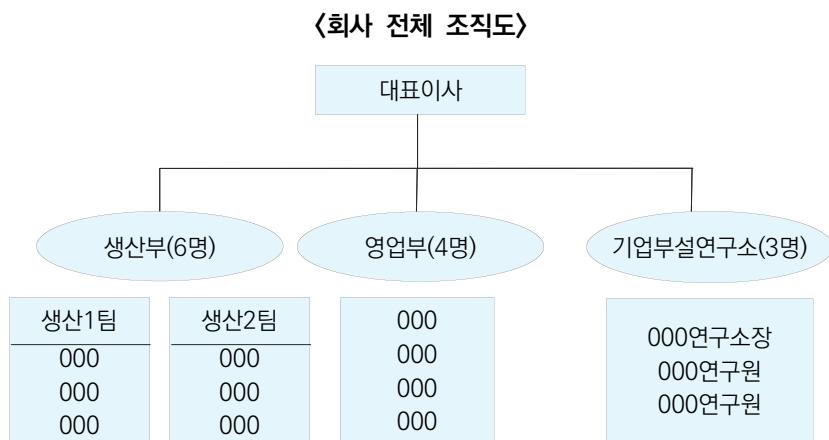
❖ 회사 및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 부서형태로 작성(연구소/전담부서 포함)
- 각 부서별 소속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단, 연구소/전담부서 조직이 세분화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별도 조직도 작성

❖ 회사 및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작성 예시

(1) 연구소/전담부서 규모가 작고 조직이 단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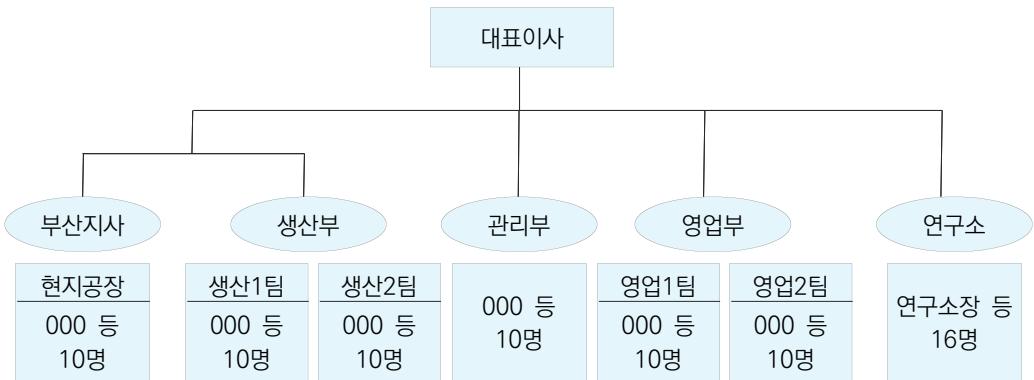
-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하고,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원 이름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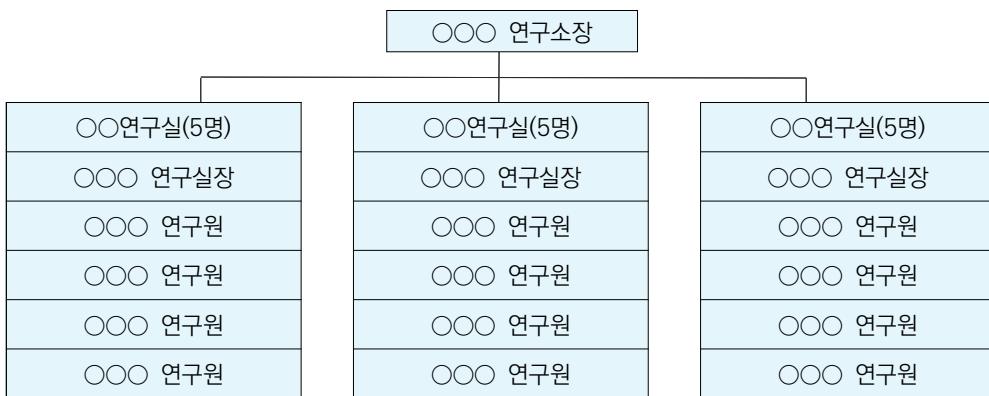
(2) 연구소/전담부서 규모가 크고 조직이 세분화된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 조직을 포함한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
-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조직도 내에 연구원명을 기재

〈회사 전체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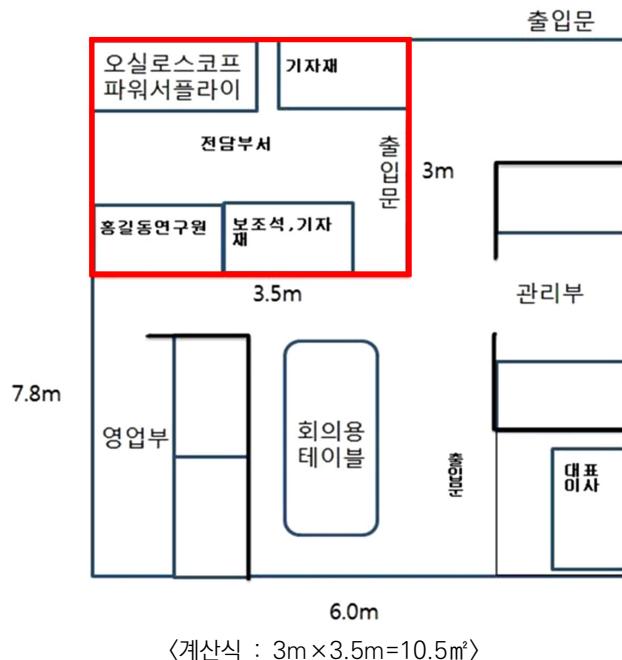
❖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Lay-Out)

- 가급적 A4 크기로 작성하되 천정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내부구조를 그대로 그려 공간구분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비품창고 등) 표시, 연구원 자리에 이름기재 및 주요 연구기자재 위치를 명기
- 도면상에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m(미터) 단위로 표기하고, 전용면적 계산식 기재
※ 유의사항 : 도면상의 계산면적과 “신고서”상의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이 일치하여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가 위치한 건물의 해당 층에 회사전체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외 다른 부서가 있다면 층의 전체 내부도면을 작성하고 연구소/전담부서 공간 해당부분 구분 표시 제출
- 연구사무실과 실험실이 별도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면 각각의 내부도면을 작성
- 연구소/전담부서가 여러 층에 있을 경우 각층의 내부도면을 각각 작성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와 본사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 작성 후, 본사 소재지의 주소를 내부도면상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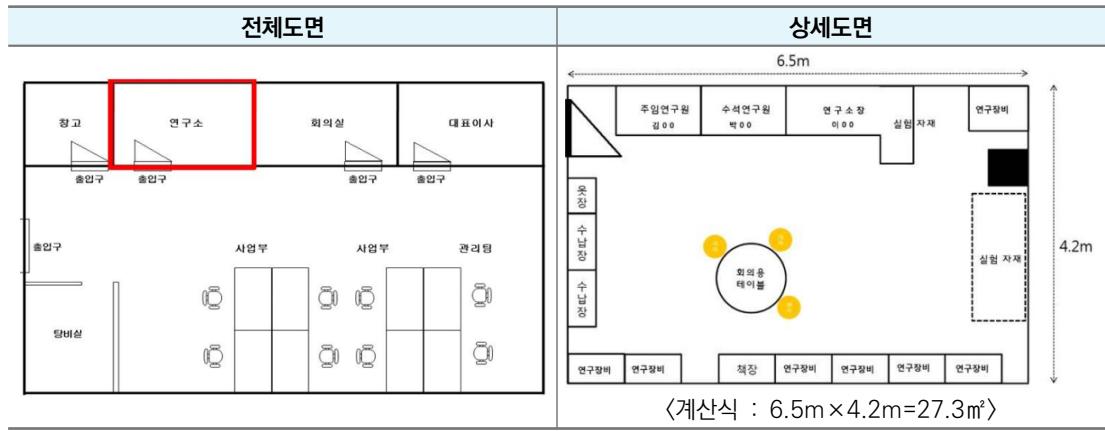
❖ 내부도면 작성 예시

(1)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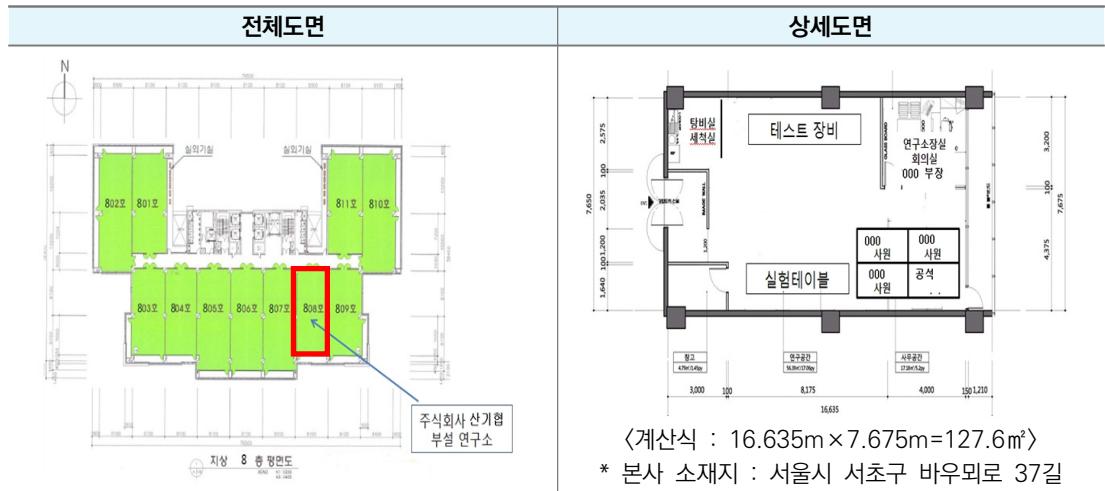


(2)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 불가능한 경우

①



②



* 본사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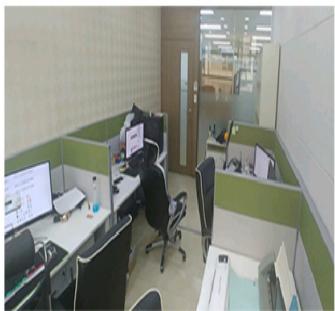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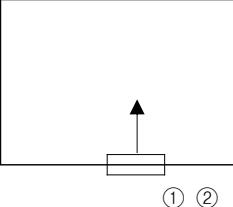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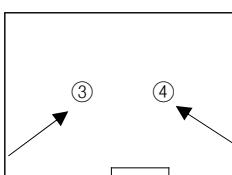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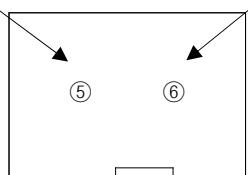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와 본사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도면 하단에 본사 소재지 기재

❖ 연구소/전담부서 관련사진 첨부 방법

- 현판(근접) 사진 1장, 출입문(현판 포함) 사진 1장, 연구소/전담부서의 내부사진 4장
- 연구소/전담부서의 독립공간 확보 및 내부 현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좌우의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를 촬영
- 연구소/전담부서가 2실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각실의 사진 제출
- 연구소/전담부서가 독립건물인 경우 외부 전경사진과 각층 각실의 사진 제출
- 아래 형태대로 사진을 촬영하되, 파일 첨부시 사진파일을 각각 첨부(설명기재를 하지 않음)

〈사진촬영 예시〉

※ 촬영 예시일 뿐이므로 촬영된 사진은 각각의 사진파일로 1장씩 제출

“연구소/전담부서” 현판 및 출입문	연구소/전담부서 내부사진(사방확인 가능)		
① 	③ 	⑤ 	
② 	④ 	⑥ 	
			

〈주의사항〉

-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은 전용출입구 근처에 부착하고, 출입문이 보이도록 촬영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출입구는 출입문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내부사진은 내부도면상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좌우의 내부를 촬영

Q & A

1.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은 가급적 A4 크기로 작성하되, 연구소/전담부서가 있는 해당 층의 전체 도면을 작성하고 연구소/전담부서 부분을 블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전담부서 내부도면을 확대하여 책상배치, 연구원 자리 배치, 이름 및 주요기자재 위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공간 면적확인을 위해 도면상에 가로 및 세로의 치수 및 면적(계산식 포함)을 m(미터)단위로 표기하고, 사무실과 실험실이 별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각의 내부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 사진은 어떻게 촬영하고 몇장을 첨부하는지?

- ☞ 사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연구소/전담부서 현판 1장(현판은 전용출입구 근처에서 부착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보이도록 촬영)
 - ② 연구소/전담부서 출입구 1장(출입문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 ③ 연구소/전담부서 내부 4장(내부도면상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넓은 각도로 전후좌우의 내부를 촬영)

※ 연구소/전담부서가 2실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각 실에 대한 사진 모두 촬영

3. 회사 및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 ☞ 회사의 모든 부서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각 부서명을 기입하고, 해당 부서별 직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때 연구소/전담부서도 회사의 한 부서이므로 회사조직도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유지 관리비 내역서 및 보험가입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 연구소 설립신고 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수의 합이 10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RND.or.kr)의 제출서류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있는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연구소 안전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방법이 있는지?

- ☞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RND.or.kr) → 정보제공 → 자료실에 게시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설립신고절차

1) 신고방법

- 인정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신고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제도소개 신규설립안내 변경신고안내 사후관리 역량진단 정보제공 고객지원

정부의 기업 R&D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R&D지원제도 바로가기

설립신고하기
작성요령 다운로드

변경신고하기
작성요령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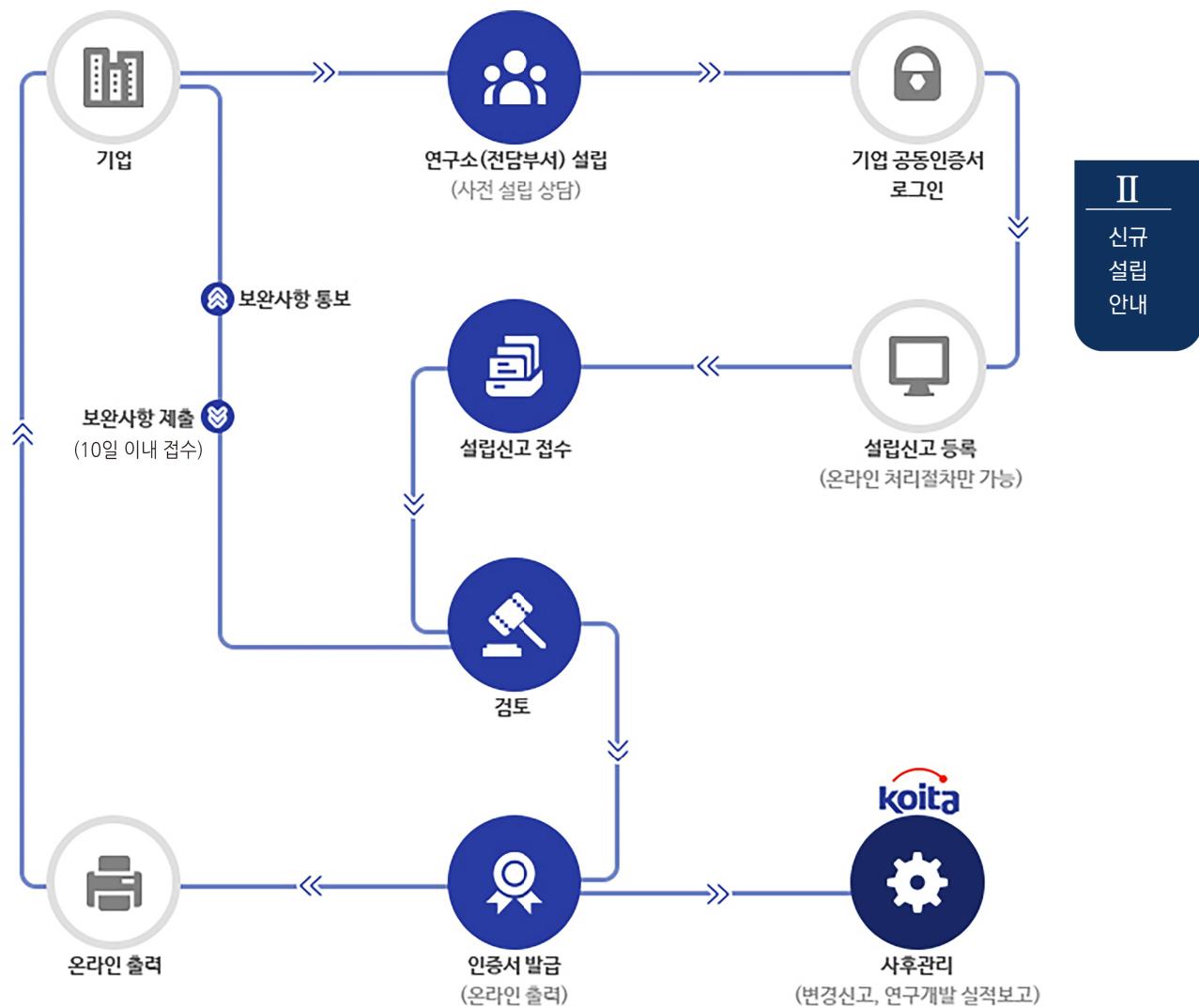
마이페이지

인정서 출력

통계현황

일반상담 ☎ 1379 + ③번
전문상담 담당자 직통번호
(수신공문 확인)

2) 처리절차



3) 신고서류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서식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기자재현황 ④ 연구개발인력현황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기자재현황 ④ 연구개발인력현황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 각1부 ⑦ 도면(총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입증서류(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법인 공동)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주업종 확인서류 (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중견기업 확인서(증견기업연합회 발급)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보고서  (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2호) 				

4) 신고하기

- 설립신고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만 가능

공동인증서(기업) 로그인

본사 사업자 번호

로그인
인증서안내/신청

■ **로그인이 안될시 로그인 오류 해결방안**을 클릭하세요.

■ **최초 신규신고는 공동인증서(기업)로만 가능합니다.**

■ **기업용(법용, KOITA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기업)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만 보입니다.**

인정번호 로그인

인정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등록 >
비밀번호 찾기 >

■ 연구소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공동인증서(기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변경 (퇴사, 인사이동) 시 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십시오

■ 인정번호로 로그인 시 신규신고, 자진취소 등 기능이 일부 제한됩니다.

II
신규
설립
안내

5) 동영상 안내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 고객지원 → 동영상 안내 → 설립신고 안내
- 작성요령 및 설립신고방법 확인 가능

3 수리 및 인정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됨(신청서 보완, 문서이송,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 시에는 정해진 기간(신규, 변경 모두 10일)내에 보완하여야 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반려 처리됨
- 제출된 서류확인을 통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 이상이 없으면 인정서를 교부함
- 인정서는 재발급이 가능함(www.RND.or.kr → “인정서 출력”)

II

신규
설립
안내

❖ 처리기간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10일 이내임
 -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날과 보완되어 재접수 되는 날 포함)*
등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준용
 -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 핸드폰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카카오톡(문자) 송신
- 제출된 설립신고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10일 내에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내용이 반려됨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 핸드폰으로 서류보완 요청 카카오톡(문자) 송신
 - ※ 담당자 핸드폰, 팩스 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주요사항 안내 및 주의사항 미수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자료보완

- 제출한 신고서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서류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할 수 있음
 - ※ 보완요청을 받고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접수가 반려되며, 이 경우는 관련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보완요청되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신청기업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연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과학기술 분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전담요원의 최종학교, 정확한 학과 명칭 및 학위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 도면 및 사진을 통해서 독립공간 여부 및 연구원 근무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도면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진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리

-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는 인정서가 발급되며 별도의 증명서 등은 발급되지 않음
 -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사실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인정서 제출
 -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나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
 - 인정서를 분실한 경우 직접 출력(www.RND.or.kr → “인정서 출력”)
- ※ 기업명, 연구소/전담부서명, 연구소/전담부서 주소, 제한조건 등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A

1.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서를 접수했을 경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기업 측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시 별도의 접수증이 교부되는지?

- ☞ 별도의 접수증은 교부되지 않으며, 온라인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리기간 동안 신고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지?

- ☞ 신고된 서류는 처리기간 동안에 출력이 불가능하며, 처리가 완료된 후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www.RND.or.kr → 고객지원 → 신고내역 확인 및 출력 → 신고내역 조회)

4.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접수 후,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가 가능한지?

- ☞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 완료한 이후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접수 후 본회 해당부서(연구소 인정팀)에 연락하시면 수정 또는 추가 가능토록 보완조치해 드립니다.

Q & A

5. 설립신고 접수 후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 ☞ 본회 해당부서(연구소인정팀)에 연락하시면 접수 철회 가능하며, 추후 설립신고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설립신고 서류는 며칠 안에 보완해야 하는지?

- ☞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설립신고 서류가 반려처리 됩니다.

II

신규
설립
안내**7. 인정서는 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 ☞ 설립신고가 처리된 후 인정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합니다.

8.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는 어떠한 경우 재교부받게 되는지?

- ☞ 기업 및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변경,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 변경 등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인정서를 재교부하게 됩니다.

9.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지?

- ☞ 재교부 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시 비용이 발생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진행 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7.26.›

제 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소재지:

3.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7.7.26. >

제 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II
신규
설립
안내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소재지:

3.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III

변경신고 안내



1. 변경신고대상
2. 변경신고절차
3. 신고 및 수리

1

변경신고대상

-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규칙 제5조 제2항)
- 주된 변경신고사항은 기업체 변경사항(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등)과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사항(연구소/전담부서명,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 연구인력, 기자재, 면적 등)이 발생한 경우임
-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이전된 경우도 변경신고에 해당됨

❖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구 분	변경신고사항(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기업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연구소의 경우만 해당)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기업합병·양수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 변경신고 유의 사항

-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는 감면세금 등을 추징받을 수 있음

- 기업유형이 상위 기업유형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을 충원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창업 3년이 경과된 소기업의 경우는 2명에서 3명으로 전담요원 수 기준이 변경됨
 - 벤처기업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벤처인증 우대(전담요원 수 2명)가 종료되기 때문에 소기업(전담요원 수 3명) 또는 중기업(전담요원 수 5명)에 해당하는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전담요원 수가 7명에서 10명으로 상향 조정됨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전담요원 수 기준이 완화됨
- 기업 간 합병 또는 양수도로 연구소/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수를 하는 기업에서 변경신고(양수도 신고)를 해야 함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양수도 신고)를 할 수 있음

❖ 변경신고 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하여 신고
 - 홈페이지 메뉴 변경신고안내 → 변경신고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범용, KOITA 특수목적용)로 로그인
- 시스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작성
 - 로그인 → 변경사항 체크 → 변경사항 입력 → 저장 → 제출하기 순으로 변경신고 진행
 - *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 체크 시 반드시 변경내용만 체크해야 함.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을 체크할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변경신고 제출서류

구분	변경신고사항	제출서류	
		온라인 지정서식	첨부서류
기업체	명칭(상호)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기업유형		중소기업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중견기업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업종		사업자등록증
연구소 전담부서	명칭	변경신고서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소재지	변경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도면) lay-out)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연구소장	연구개발 인력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개발 인력현황	
	연구공간	변경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 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도면) lay-out)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도신청공문(양수기업)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분할 등의 사실이 등록된 것) 양수도계약서(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 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신규 설립시 제출서류 일체(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된 것)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은 사실확인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이용 미동의나 별도 요구받는 기업에 한해 제출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임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 지정서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4.\)](#)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알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기업체	명 칭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업종(KSIC) (주 생산품)	()			()			
	명 칭							
	신청 분야	[] 과학기술 [] 서비스				[] 과학기술 [] 서비스		
연구 분야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부설 연구 소장	성 명							
	직 위							
	전임 여부	[] 전 임 [] 겸 임		[] 전 임 [] 겸 임				
	연구 개발 인력	연구전담 요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용		변 경 후 연구시설 내 근무
				연구시설 내 근무		전 입	전 출	
			박 사	명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명	
연구보조원			명	명	명	명	명	
연구관리직원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연구기자재	총 종		총 종					
연구공간	유 형		전용면적		유 형		전용면적	
	[] 소유	[] 물건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소유	[] 물건체	[] 독립공간	
	[] 임대	[]	[]	[]	[] 임대	[]	[]	
		m ²				m ²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변경신고 사항		첨부서류
기 업 체	명 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소 재 지	▷ 변경 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대 표 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기업 유형	▷ 기업 유형(대, 중견, 중, 소)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업 종	▷ 변경 업종의 KSIC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기업부설 연 구 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청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연구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소 재 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기업부설연구소장	▷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근무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인력을 모두 기재합니다)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변경 전 사항은 전부 적고 변경 후 사항은 해당 사항만 적습니다.
- 주소지가 빌딩 내에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Q & A

1.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규칙 제5조(변경신고) 참조).

2. 연구소/전담부서의 일부 연구원이 퇴사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지금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변경처리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회계관련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를 통해 양수를 하는 기업이 양수도에 따른 변경신고(양수도신고)를 신청하시고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본점), 법인등기부등본, 양수도공문, 양수도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후 변경된 법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수한 기업기준으로 신규설립 신고시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인정서에 있는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전담요원이 2명인 벤처기업, 창업3년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 인정서에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온라인 변경신고를 통해 인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하며, 변경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연구소/전담부서를 2개 운영중인데,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취소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 취소하고자 하는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 취소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팩스로 제출(02-3460-9019)하여 주시거나, 직접 온라인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취소 : www.RND.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진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연구소명 선택 → 우측의 “자진취소” 클릭

6. 변경신고 접수 후 미처 변경되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추가 변경이 가능한지?

- ☞ 온라인으로 변경신고서를 담당자가 접수한 이후에는 추가 변경이 불가하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완을 통해 추가항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A

7. 전담요원이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 ☞ 전담요원이 연구소/전담부서에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변경신고를 하여 전담요원 명단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8.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또는 연구소에서 전담부서)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전담부서를 연구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 취소신고와 연구소 설립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전담부서 취소신고에 따른 서류(취소사유가 기재된 기업공문 또는 또는 설립신고 기업정보란 하단에 기준 연구소/전담부서 취소등록)와 연구소 신규설립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처리절차는 연구소 신규설립 인정 후 전담부서를 취소하므로, 연구소 미승인시에는 전담부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2 변경신고절차

1) 신고방법

- 신고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온라인 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신고

III
변경
신고
안내

2) 처리절차



3) 신고사항 및 신고서류

구분	변경신고사항		신고서류
기업체 정보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단가 : 백만원 단위로 작성	-
	명칭(상호)	연구소의 경우 기업명 변경 시 연구소명도 변경 필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소재지(본점) 이전 시, 대표자 변경시,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업종		사업자등록증
	표준산업분류코드		
연구소 - 전담부서 정보	법정기업유형	해당기업의 유형에 따라 해당서류 반드시 첨부	중소기업/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
	명칭	연구소명 변경 시 변경된 연구소명의 현판을 출입문에 부착 후 사진촬영하여 첨부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서비스 분야 변경시 해당)
	직원현황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퇴사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삭제 미리보기 신규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등록 미리보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학위등록번호 및 계열(전공)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 연 구관련 경력 확인을 위한 기업체에서 발급 된 경력증명서)
	소재지 및 면적	연구소 소재지 이전 및 연구공간 변경 시 도면, 현판사진, 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도면) lay-out 샘플보기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 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샘플보기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연구용 기자재		
	양수도 신청하기	양수도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도 신청공문(양수기업) 샘플보기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분할등의 사실 이 등록된 것) 양수도계약서(연구소의 포괄적 인수 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 서 류 일체(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된 것)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은 사실확인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이용 미동의나 별도 요구받는 기업에 한해 제출

4) 동영상 안내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 고객지원 → 동영상 안내 → 변경신고 안내
- 작성요령 및 변경신고방법 확인 가능

3 신고 및 수리

-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됨(신청서 보완, 문서이송,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 시에는 정해진 기간(신규, 변경 모두 10일)내에 보완하여야 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반려 처리됨
- 인정서는 재발급이 가능함(www.RND.or.kr → “인정서 출력”)

❖ 처리기간

- 연구소/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10일 이내임
 -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날과 보완되어 재접수되는 날 포함)* 등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준용
 -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 핸드폰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카카오톡(문자) 송신
- 제출된 변경신고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선확인 또는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내용이 반려됨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 핸드폰으로 서류보완 요청 카카오톡(문자) 송신
 - ※ 담당자 핸드폰, 팩스 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주요사항 안내 및 주의사항 미수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자료보완

- 제출한 신고서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서류를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 ※ 보완요청을 받고 10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접수가 반려되며, 이 경우는 관련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보완요청되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신청기업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연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과학기술분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연구소 직원의 최종학교, 정확한 학과 명칭 및 학위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 도면 및 사진을 통해서 독립공간 여부 및 연구원 근무현황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도면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진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III

변경
신고
안내

❖ 수리

-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 처리 완료 시 수리 결과 통보 및 공문 생성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 등 인정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정서는 재교부되며 온라인 (www.RND.or.kr)으로 출력 가능

Q&A

1. 연구소/전담부서 변경 신고서를 접수했을 경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기업 측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시 별도의 접수증이 교부되는지?

- ☞ 별도의 접수증은 교부되지 않으며, 온라인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 제출 후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가 가능한지?

- ☞ 처리상태가 '제출'(www.RND.or.kr → 마이페이지 → 변경신고 → 처리상태)인 경우 정상적으로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접수' 상태가 되기 전 수정 후 다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 순위가 후순위로 배치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신고 서류는 며칠 안에 보완해야 하는지?

- ☞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신고 서류가 반려처리 됩니다.

5. 재교부된 인정서는 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 ☞ 변경신고가 처리된 후 인정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합니다.

6. 변경신고 접수 후 신고한 서류를 철회할 수 있는지?

- ☞ 변경신고 접수 후 서류 검토 중 기업 사정에 의해 변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본회 해당부서(연구소 인정팀)에 연락하여 변경신고 반려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반려 후 변경신고를 다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하였던 정보의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Q & A

7.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는 어떠한 경우 재교부받게 되는지?

- ☞ 기업 및 연구소/전담부서 명칭변경,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 변경 등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인정서를 재교부하게 됩니다.

8. 일부 연구원이 퇴사하여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지 1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 ☞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변경 처리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회계 관련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II

변경
신고
안내

IV

사후관리



1. 연구개발활동조사
2. 인정요건 유지 확인
3. 인정취소

1

연구개발활동조사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영 제17조 제1항 제4호, 신고요령 제8조)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 시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됨(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

❖ 실적보고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 연구소/전담부서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신고와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 통계로 활용
 - 전년도 12월까지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중 조사표 제출 안내공문 발송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신고는 별도로 실시해야 함

Q&A

1.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https://research.rnd.or.kr>)에서 조사표를 온라인상에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는 4월초에 시작되며 조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기업에서 누가 작성하는지?

- ☞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담당자가 작성하시되, 개발비 관련해서는 귀사의 회계부서와 협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 A

3.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시 어떻게 되는지?

- ☞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거,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4. 올해 1월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정받았다면 올해 제출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5. 전년도 12월에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12월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연구원의 인건비 지출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 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하다가 올해 연구소로 신규설립 및 기존 전담부서를 취소하였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는지?

-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전담부서가 있었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매년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활동조사표도 제출해야 하는지?

-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개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서식 1]

연구개발활동조사표

0000 사업년도분

- 기업체용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번 호	
홈페이지					
대표자	직 위			성 명	(인)
작성자	연구소명			부 서	
	직 위			성 명	(인)
	전 화			팩 스	
	이 메 일				

가. 일반현황

회사일반사항	조직의 형태		()안에서 선택(1.민간기업, 2.정부투자·재투자기관)
	법정유형		()안에서 선택(1.대기업, 2. 중견기업, 3.중소기업, 4.벤처기업)
	산업분류코드		다섯 자리로 기재
	설립년도		년
	종업원수		명
회사현황	자본금		백만원
	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나. 연구개발인력

1. 연구개발인력의 직능별 구분 및 실질 연구참여 인력

구 분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합 계
			연구지원·기능인력	연구행정·기타지원인력	
0000년 현황	남 성	명	명	명	명
	여 성	명	명	명	명
	합 계	(A) 명	(B) 명	(C) 명	명
	평균 연구참여 비율	%	%	%	공란

2. 연구원의 연령별 구분 (연구원수만 기재, 연구보조원(지원·행정 등)은 제외)

구 분	29세 이하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합 계
남 성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성	명	명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명	(A) 명

3. 연구원의 전공별 · 학위별 구분 (연구원수만 기재, 연구보조원(지원·행정 등)은 제외)

(단위 : 명)

구 分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이 학									
공 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합 계									(A)

다. 연구개발비

4.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경상비 (D)				자본적 지출 (E) ※ 해당 연도 취득가액만 기입					자사(自社) 부담 외부지출 연구개발비(F) (공동 위탁연구 등)		기업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G=D+E)	
인건비	교육 훈련비	원자료비	기타 경상비	기계·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지식재산물				

5. 기업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분 (조사항목 4번의 G에 관한 질문)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적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① 기업이 연구개발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한 연구개발비		백만원
정부 재원	중앙부처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백만원
	국·공립대학교	백만원
	국·공립연구기관	백만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백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백만원
공공 재원	기타비영리법인	백만원
	사립대학교	백만원
민간 재원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백만원
	외부 민간업체	백만원
	정부투자·재투자기관	백만원
외국 재원	동일계열사 소속 기업체	백만원
	외부 기업체	백만원
	외국정부	백만원
	외국비영리법인	백만원
	외국대학	백만원
	EU	백만원
	국제기구	백만원
합 계 (①+②)		(G) 백만원

6.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공동 및 위탁연구 등)의 수행 기관 구분 (조사항목 4번의 F에 관한 질문)

(단위 : 백만원)

국·공립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기관	지자체 출연 기관	기타 비영리 법인	사립 대학교	국내 기업			외 국						합 계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외부 민간업체	정부투자·재투자기관	동일 계열사 소속업체	외부 기업체	외국 정부	외국 비영리 법인	외국 대학	국제 기구	
															(F)

7. 기업 내 사용연구비의 세부항목별 구분 (조사항목 4번의 G에 관한 질문)

7-1.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단계별 구성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계
%	%	%	100%

7-2.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용도별 구성비

제품관련		공정관련		합계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	%	%	%	100%

7-3.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기술분류별 구성비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대기/해양/천문)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	%	%	%	%	%	%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	%	%	%	%	%	%
환경	건설/교통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예술학·미학)	언어	문학	문화/예술/체육 (디자인)
%	%	%	%	%	%	%
법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인류/ 복지/여성	생활 (소비자·의류·주 거)	지리/지역/관광	심리
%	%	%	%	%	%	%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헌정보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합계	
%	%	%	%	%	100%	

7-4.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경제사회목적별 구성비

지구개발 및 탐사	환경	우주개발 및 탐사	교통,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에너지	산업생산 및 기술	건강
%	%	%	%	%	%	%
농업	교육	문화, 휴양, 종교 및 매스미디어	정치·사회시스템, 구조 및 과정	지식의 일반적 진보	국방	합계
%	%	%	%	%	%	100%

7-5.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6T별 구성비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	기타	합계
%	%	%	%	%	%	%	100%

7-6.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연구분야별 구성비

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합계
%	%	%	%	%	%	100%

라. 지역별 구분

8.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구분

지역별 구분	연 구 개 발 인 력 (명)						자체사용연구개발비	
	연 구 원			연구보조 및 행정지원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서울							백만원	
부산							백만원	
대구							백만원	
인천							백만원	
광주							백만원	
대전							백만원	
울산							백만원	
경기							백만원	
강원							백만원	
충북							백만원	
충남							백만원	
전북							백만원	
전남							백만원	
경북							백만원	
경남							백만원	
제주							백만원	
세종							백만원	
합계			(A)			(B+C)	(G)	
							백만원	

마.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9.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순서	연구개발 과제			총 연구개발기간 (개월)	연구개발형태				연간연구 개발수행 총 건수		
	구분 (자체/외부과 제)	과제명			단독 연구	공동 연구					
						산학	산산	산연			
예시	외부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TFT-LCD 광학용 필름 개발	15개월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총: 10건	
1		<input type="checkbox"/>								20XX년 실적 (총 건)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활동조사표

0000 사업년도분

– 기업체용(건설업)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번 호	
홈페이지					
대 표자	직 위			성 명	(인)
작성자	연구소명			부 서	
	직 위			성 명	(인)
	전 화			팩 스	
	이 매 일				

가. 일반현황

회사일반사항	조직의 형태		()안에서 선택(1.민간기업, 2.정부투자·재투자기관)
	법정유형		()안에서 선택(1.대기업, 2. 중견기업 3.중소기업, 4.벤처기업)
	산업분류코드		다섯 자리로 기재
	설립년도		년
	종업원수		명
회사현황	자본금		백만원
	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1. 연구개발인력의 직능별 구분 및 실질 연구참여 인력

구 분	연 구 원	연 구 보조원		합 계
		연구지원·기능인력	연구행정·기타지원인력	
0000년 현황	남 성	명	명	명
	여 성	명	명	명
	합 계	(A) 명	(B) 명	(C) 명
	평균 연구참여 비율	%	%	공란

IV

사
후
관
리

2. 연구원의 연령별 구분 (연구원수만 기재, 연구보조원(지원·행정 등)은 제외)

구 분	29세 이하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합 계
남 성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성	명	명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명	(A) 명

3. 연구원의 전공별·학위별 구분 (연구원수만 기재, 연구보조원(지원·행정 등)은 제외)

(단위 : 명)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이 학									
공 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합 계									(A)

다. 연구개발비

4. 연구개발비의 세부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내부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				외부업체로 지출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합계
시공 후 사후관리비 (민원대응 등)	설계비 시공비	순수 연구개발비* (D)	기타 (환경영향평가비 Turnkey비용 등)	설계비 시공비	자사(自社) 부담 순수연구개발비 (공동·위탁연구 등) (E)	기타 (환경영향평가비 Turnkey비용 등)	

5.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현황 (조사항목 4번의 D에 관한 질문)

(단위 : 백만원)

경상비				자본적 지출 * 해당 연도 취득기와만 기입					기업내부에서 사용한 순수 연구개발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원자료비	기타 경상비	기계·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지식재산물	
									(D)

6. 기업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분 (조사항목 4번의 D에 관한 질문)

구 분		실적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① 기업이 연구개발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한 연구개발비		백만원
정부 재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공 재원	기타비영리법인 사립대학교	백만원 백만원
민간 재원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외부 민간업체 정부투자·재투자기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외국 재원	동일계열사 소속 기업체 외부 기업체 외국정부 외국비영리법인 외국대학 EU 국제기구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 계 (①+②)		(D) 백만원

IV

사
후
관
리

7.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공동 및 위탁연구 등)의 수행 기관 구분 (조사항목 4번의 E에 관한 질문)

(단위 : 백만원)

국·공립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기관	지자체 출연 기관	기타 비영리 법인	사립 대학교	국내 기업		외 국						합 계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외부 민간업체	정부투자·재투자기관	동일 계열사 소속업체	외부 기업체	외국 정부	외국 비영리 법인	외국 대학	
														(E)

8. 기업 내 사용연구비의 세부항목별 구분 (조사항목 4번의 D에 관한 질문)

8-1.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단계별 구성비

기 초 연 구	응 용 연 구	개 발 연 구	합 계
%	%	%	100%

8-2.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용도별 구성비

제 품 관 련		공 정 관 련		합 계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	%	%	%	100%

8-3.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기술분류별 구성비

수 학	물리학	화 학	지구과학 (지구/대기/해양/천문)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	%	%	%	%	%	%
기 계	재 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	%	%	%	%	%	%
환경	건설/교통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예술학·미학)	언어	문 학	문화/예술/체육 (디자인)
%	%	%	%	%	%	%
법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인류/ 복지/여성	생활 (소비자·의류·주거)	지리/지역/관광	심리
%	%	%	%	%	%	%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화정보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합 계	
%	%	%	%	%	100%	

8-4.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경제사회목적별 구성비

지구개발 및 탐사	환경	우주개발 및 탐사	교통,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에너지	산업생산 및 기술	건강
%	%	%	%	%	%	
농업	교육	문화, 휴양, 종교 및 매스미디어	정치·사회시스템, 구조 및 과정	지식의 일반적 진보	국방	합계
%	%	%	%	%	%	100%

8-5.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6T별 구성비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	기타	합계
%	%	%	%	%	%	%	100%

8-6.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연구분야별 구성비

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합계
%	%	%	%	%	%	100%

라. 지역별 구분

9.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구분

지역별 구분	연 구 개 발 인 력 (명)						자체사용연구개발비	
	연 구 원			연구보조 및 행정지원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서울							백만원	
부산							백만원	
대구							백만원	
인천							백만원	
광주							백만원	
대전							백만원	
울산							백만원	
경기							백만원	
강원							백만원	
충북							백만원	
충남							백만원	
전북							백만원	
전남							백만원	
경북							백만원	
경남							백만원	
제주							백만원	
세종							백만원	
합계		(A)			(B+C)	(D)	백만원	

마.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10.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순서	연구개발 과제		총 연구개발기간 (개월)	연구개발형태				연간연구 개발수행 총 건수	
	구분 (자체/외부 과제)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여부		공동 연구					
				단독 연구	산학	산산	산연	해외	
예시	외부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TFT-LCD 광학용 필름 개발	15개월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총: 10건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활동조사표

0000 사업년도분

- 기업체용(소프트웨어개발업)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번 호		
홈페이지							
대표자	직 위				성 명	(인)	
작성자	연구소명			부 서			
	직 위			성 명	(인)		
	전 화			팩 스			
	이 메 일						

가. 일반현황

회사일반사항	조직의 형태		()안에서 선택(1.민간기업, 2.정부투자·재투자기관)
	법정유형		()안에서 선택(1.대기업, 2.중견기업, 3.중소기업, 4.벤처기업)
	산업분류코드		다섯 자리로 기재
	설립년도		년
	종업원수		명
회사현황	자본금		백만원
	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나. 연구개발인력

1. 연구개발인력의 직능별 구분 및 실질 연구참여 인력

구 분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합 계
			연구지원·기능인력	연구행정·기타지원인력	
0000년 현황	남 성	명	명	명	명
	여 성	명	명	명	명
	합 계	(A) 명	(B) 명	(C) 명	명
	평균 연구참여 비율	%	%	%	공란

2. 연구원의 연령별 구분 (연구원수만 기재, 연구보조원(지원·행정 등)은 제외)

(단위 : 명)

구 분	29세 이하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합 계
남 성	명	명	명	명	명	명
여 성	명	명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명	(A) 명

3. 연구원의 전공별 · 학위별 구분 (연구원수만 기재, 연구보조원(지원·행정 등)은 제외)

(단위 : 명)

구 分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이 학									
공 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합 계									(A)

다. 연구개발비

4.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경상비 (D)				자본적 지출 (E) ※ 해당 연도 취득기와만 기입					자사(自社) 부담 외부지출 연구개발비 (F) (공동위탁연구 등)	기업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G=D+E)
인건비	교육 훈련비	원재료비	기타 경상비	기계·장 치	토지	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지식재산물		

5. 기업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분 (조사항목 4번의 G에 관한 질문)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적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① 기업이 연구개발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한 연구개발비			백만원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② 연구개발목적으로 외부(정부, 출연연, 민간기업 등)에서 수탁 받은 연구개발비	정부 재원	중앙부처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백만원
		국·공립대학교	백만원
		국·공립연구기관	백만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백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백만원
	공공 재원	기타비영리법인	백만원
		사립대학교	백만원
	민간 재원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백만원
		외부 민간업체	백만원
		정부투자·재투자기관	백만원
	외국 재원	동일계열사 소속 기업체	백만원
		외부 기업체	백만원
		외국정부	백만원
		외국비영리법인	백만원
		외국대학	백만원
		EU	백만원
		국제기구	백만원
합계 (①+②)			(G) 백만원

6.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공동 및 위탁연구 등)의 수행 기관 구분 (조사항목 4번의 F에 관한 질문)
(단위 : 백만원)

국·공립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기관	지자체 출연 기관	기타 비영리 법인	사립 대학교	국내 기업			외 국						합 계
						동일계열사내 다른업체	외부 민간업체	정부투자 ·제휴기관	동일 계열사 소속업체	외부 기업체	외국 정부	외국 비영리 법인	외국 대학	국제 기구	
															(F)

7. 기업 내 사용연구비의 세부항목별 구분 (조사항목 4번의 G에 관한 질문)

7-1.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단계별 구성비

기 초 연 구		응 용 연 구		개 발 연 구		합 계	
%		%		%		1 0 0 %	

7-2.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용도별 구성비

제 품 관 련		공 정 관 련		합 계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	%	%	%	1 0 0 %

7-3.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기술분류별 구성비

수 학	물리학	화 학	지구과학 (지구/대기/해양/천문)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	%	%	%	%	%	%
기 계	재 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	%	%	%	%	%	%
환경	건설/교통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예술학·미학)	언어	문 학	문화/예술/체육 (디자인)
%	%	%	%	%	%	%
법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인류/ 복지/여성	생활 (소비자·의류·주거)	지리/지역/관광	심리
%	%	%	%	%	%	%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화정보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합 계	
%	%	%	%	%	1 0 0 %	

7-4.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경제사회목적별 구성비

지구개발 및 탐사	환 경	우주개발 및 탐사	교통,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에너지	산업생산 및 기술	건 강
%	%	%	%	%	%	%
농업	교육	문화, 휴양, 종교 및 매스미디어	정치·사회시스템, 구조 및 과정	지식의 일반적 진보	국방	합 계
%	%	%	%	%	%	1 0 0 %

7-5.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6T별 구성비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	기 타	합 계
%	%	%	%	%	%	%	100 %

7-6.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연구분야별 구성비

이 학	공 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합 계
%	%	%	%	%	%	100 %

8.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구성비

구 분	예 시	비 중
연구활동 (OECD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분인 소프트웨어와 자체 최종 생산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 이론적 컴퓨터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수준에서 정보기술의 개발 ■ 인터넷 기술의 개발 ■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기법과 관련된 연구 ■ 정보 전송, 포착, 저장, 복구, 조작, 디스플레이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나 시스템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 특화된 컴퓨터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미지처리, 지리학적 자료 출력, 인공지능 등) 	%
비연구활동 (OECD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 알려진 방법이나 기존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한 기업용 응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 ■ 기존시스템 지원 ■ 응용프로그램에 사용자 기능 추가 ■ 기존소프트웨어의 적용 ■ 컴퓨터언어의 번역, 또는 번역 ■ 시스템 결함 수정(debugging) ■ 사용자용 문서(매뉴얼 등) 작성 	%
		100 %

라. 지역별 구분

9.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구분

지역별 구분	연 구 개 발 인 력 (명)						자체사용연구개발비	
	연 구 원			연구보조 및 행정지원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서울							백만원	
부산							백만원	
대구							백만원	
인천							백만원	
광주							백만원	
대전							백만원	
울산							백만원	
경기							백만원	
강원							백만원	
충북							백만원	
충남							백만원	
전북							백만원	
전남							백만원	
경북							백만원	
경남							백만원	
제주							백만원	
세종							백만원	
합계			(A)			(B+C)	(G)	
							백만원	

마.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10.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순서	연구개발 과제		총 연구개발기간 (개월)	연구개발형태				연간연구 개발수행 총 건수		
	구분 (자체/외부 과제)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여부		공동 연구						
				단독 연구	산학	산산	산연	해외		
예시	외부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TFT-LCD 광학용 필름 개발	15개월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총: 10건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20XX년
실적
(총 건)

2 인정요건 유지 확인

- 협회에서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현지확인을 실시함
- 사후관리는 자료요청 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변경신고, 인정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사후관리

-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촉진, 인정요건 유지 및 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 휴·폐업 여부 확인
 - 중견기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우대적용 경과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인정요건 확보 여부 확인
 - 1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에 대한 인정요건 및 연구활동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지속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 시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활동 여부 확인
 - 부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신고내역(신규/변경)에 대한 사실확인
- 신고된 내용처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업은 사후관리 관련 문서 제출이나 확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설립 및 변경신고 서류 사본 : 신고내용과의 변동여부 확인
 - 연구전담요원 자격증명 서류 및 인사발령 서류 : 전담요원의 자격요건과 신고내용의 동일여부 확인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은 사실확인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이용 미동의나 별도 요구받는 기업에 한해 제출

❖ 현지확인내용

- 인정 후에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활동 전담여부 확인
 - 연구공간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확보 여부 및 연구활동 수행여부 종합 점검
 - 기타 연구소/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상담

❖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조치

연구개발활동	인정요건 종족	신고내용 일치	조치내용
있음	총족	일치	이상없음
	미달	일부 불일치	1개월 이내 미보완 시 인정취소
없음	미달	불일치	인정취소

현지확인 보고서

기업명					대표이사			
연구소명					연구소장			
소재지								
기업규모					종업원수			

연구분야					인정번호				
연구소면적					기자재	0 종			
직원 현황	전담 요원	박사	0	석사	0	학사	0	전문	0
	보조원	0	관리직원	0	합계				0

구분	번호	체크포인트 (이상없음(○), 보완요망(X), 판단유보(△))	확인	의견
전체 사항	1	기업의 연구소외 조직확인, 기업유형확인	기업규모, 조직도, 종업원수	
	2	연구개발활동 수행내용 확인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연구내용	
인적 요건	3	연구원의 연구개발 전담여부	업무내용, 명함, 인사발령 서류등	
	4	연구소 직원 자격확인 및 총족여부	4대보험, 학위, 자격증 등 증명서류	
	5	연구소내 상시근무 여부	자리 확인	
물적 요건	6	신고내용과 일치여부	도면 비교 및 연구기자재	
	7	연구소 현판 확인	출입구	
서류	8	설립, 변경서류, 건축물대장 등		

확인 결과	○이상없음
	○변경신고요망(제출기한: 년 월 일)[인적요건상이() / 물적요건상이()]
	○추적불가(유선 및 홈페이지 확인, 회사이전)
	○조건부취소(제출기한: 년 월 일)[인적요건미달() / 물적요건미달()]
	○자진취소(인정서/확인서 원본 첨부) ○직권취소(연구활동 중단, 요건미달)
	○휴/폐업 ○허위신고 취소
	※ 조건부 취소일 경우 제출기한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확인자 의견란	
연구개발 수행과제	

확인 기준	1. 이상없음: 신고내용과 동일
	2. 조건부 취소: 일부 요건이 미달(인적요건 총족+물적요건 미흡) 또는 물적요건 총족+인적요건 미흡)되나, 단기간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3. 직권취소: 연구활동이 없거나, 일부 연구활동은 수행하지만 인적, 물적요건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
	4. 허위신고 취소: 인정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연구활동 없음, 연구 전담요원 부적절, 연구공간 임시 전용신고등)

Q&A

1.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귀 협회의 공문을 수령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공문의 요청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사항(연구원, 소재지, 면적, 기업명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기한 내에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구소/전담부서가 운영되지 않거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취소공문을 팩스로 제출(02-3460-9019)하거나 신고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소등록을 통해 취소처리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추후조치가 진행되거나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소/전담부서 현지확인은 언제 실시하는지?

-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시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 처리합니다. 다만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전담여부, 연구공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인정 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3. 현지확인 일정은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지?

- ☞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고 있으나, 부실 연구소/전담부서로 신고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현지확인 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전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 ☞ 반드시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연구소장, 신고관리담당자 등 필요서류 및 사실확인에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5. 현지확인 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내역과 실제운영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고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연구원, 소재지 등) 30일 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의 이전 등으로 연구소/전담부서가 신고한 소재지에 없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위로 한 것이 발견될 경우 직권으로 취소되며, 이 경우 향후 1년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직권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6. 현지확인 진행시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가 어떤 것인지?

- ☞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연구노트(일지) 등 연구내용 확인가능한 서류일체가 해당됩니다.

3 인정취소

- 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나 자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이 취소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인정이 취소되고,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법 제14조의3 제1항)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정요건에 미달되어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 근무하는 자가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가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인 경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V
사
후
관
리

❖ 허위/부정 신고에 따른 제재(법 제14조의3 제3항)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 취소 전 청문의 시행(법 제14조의3 제2항)

- 연구소/전담부서의 휴·폐업 시 취소 및 기업의 요청에 의한 취소 외 법률상 취소에 해당할 경우 청문 시행

※ 취소 및 청문 관련 안내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신고시 입력한 본점 소재지와 담당자 연락처로 발송되므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9항)

배제 사유	배제 시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인정취소일

Q&A

1. 회사의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연구소/전담부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구소/전담부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팩스(02-3460-9019)를 통해 접수·신고 또는 신고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소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연구개발활동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담부서에 인원충원을 통해 연구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 전담부서를 연구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 취소신고와 연구소 설립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전담부서 취소신고에 따른 서류(취소사유가 기재된 기업공문 또는 또는 설립신고 기업정보란 하단에 기존 연구소/전담부서 취소등록)와 연구소 신규설립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처리절차는 연구소 신규설립 인정 후 전담부서를 취소하므로, 연구소 미승인시에는 전담부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연구소 자진취소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요건이 충족되어 연구소를 설립신고 하려는데, 가능한지?

- ☞ 기업에서 자진취소를 한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요건 충족시 언제든지 설립신고 가능합니다.

4. 연구소/전담부서 현지확인 후 실제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직권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인지?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 직권 취소된 기업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고 불가합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설립 가능합니다.

Q & A

5. 벤처기업 만료일/창업 3년 요건이 지나고 난 후에는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되는지?

☞ 벤처기업 인증 후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최소 요건(전담요원 2인)으로 인정된 경우와 창업 3년 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최소 요건(전담요원 2인, 대표이사 전담요원 등록 등)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서 상 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대상에 해당되오니 신속하게 해당사항 조치(벤처기업 재인증 또는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요건에 맞게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사
후
관
리

V

부록



1. 관계법령
2. 신고제도 연혁
3.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시행 및 확대
4. 서비스 분야 R&D 정의 및 사례
5. 보전산지 전용 추천
6. 주요지원제도

1

관계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7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의학·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④의2.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체·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별칙)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 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교육부

-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 7) 국립·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다. 국방부

-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석사·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지원
 -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라. 행정안전부
-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V
부
록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 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가.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 2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등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알린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연구전담요원등이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② 삭제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험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제21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신청 기업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의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운영경비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6조의2 삭제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완 명령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4. 삭제
5.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사무
6.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7.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
8.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V
부
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3. 3.>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는 다음 표에 규정된 서비스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무도장 운영업	912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6.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전산상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 같은 의무를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을 위반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월)
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40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2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60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20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60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20
사. 법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5호	4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3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2)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3) 영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종만 해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삭제

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 및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영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삭제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삭제
 11. 제2조 제7항에 따른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삭제
 14. 삭제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4. 삭제
5. 삭제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변경신고) ① 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변경신고 사항을 말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회는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4조의6 제1항 및 영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영 제21조의3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 2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 ④ 영 제21조의3 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⑤ 영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V
부
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4. >

변경신고 사항(제5조제1항 관련)

항 목	변경신고 사항
기업체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기업 유형
	업 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연구 분야
	소 재 지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시행 2022. 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8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고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인정서의 발급) 협회장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소 신고서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4. 삭제
5. 연구소·전담부서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

제6조의2(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2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연구 자료 수집,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의3(교육의 제공) 협회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교육 과정을 개설(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연구소·전담부서 운영관리 실무
2. 정부연구개발지원제도 이해
3. 연구개발(R&D)활동 가이드라인
4.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제7조(현지확인 실시)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 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실시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연구소로 신고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자는 당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발췌)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발췌)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V
부
록

소득세법 시행령(발췌)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0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관세법(발췌)

[시행 2022. 9. 18.]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V
부
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발췌)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350호, 2020. 6. 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대학·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연구실안전관리사”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4.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V

부
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458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장비 명세서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⑦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기술인력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기술인력이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 「군인 재해보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때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할 것

2. 치료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한 치료비 총액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시행 2022.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1. 신규 교육· 훈련	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 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사람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 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 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 교육· 훈련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 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 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 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3. 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 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0조 제2항 관련)

구분	교육시기·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신규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정된 후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보고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가입 내용	보험회사명	가입 연월일
	보험명	보험기간
	가입금액	가입 대상자 수
	사망 보상한도	후유장애 보상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V
부
록

첨부서류	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서식] (개정 2019.10.23.)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1. 전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사용내역

가. 총괄 내역 (전년도 연구실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

구분	기관자체 예산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¹⁾ 확보액 및 집행액(A)	연구비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총계(A+D)	(단위: 원, %)
		연구비총액 ²⁾ (B)	인건비 ³⁾ (C)	안전관리비 ⁴⁾ (D)	비율 (D/C)		
확보액	원	원	원	원	%	원	
실집행액	원	원	원	원	%	원	

나. 항목별 내역

항목	집행 실적 (전년도)		(단위: 원)
	확보액	실집행액	
계			
보험료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교육·훈련비, 포상비			
건강검진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 시스템 비용			
기타			

- 기관자체 운영예산으로 보험료,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 유지 및 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을 위해 확보 또는 실제 집행한 총예산
-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과학기술 연구비의 총액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합한 금액
-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2. 당해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확보내역

가. 총괄 내역 (당해년도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내역)

기관자체 예산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¹⁾ 확보액(A)	연구비에서 확보한 안전관리비				총계(A+D)
	연구비 총액 ²⁾ (B)	인건비 ³⁾ (C)	안전관리비 ⁴⁾ (D)	비율 (D/C)	
원	원	원	원	%	원

나. 항목별 내역

항목	당해연도 확보액(계획)	(단위: 원)
계		
보험료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교육·훈련비, 포상비		
건강검진비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 시스템 비용		
기타		

- 기관자체 운영예산으로 보험료,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연구실 유지 및 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을 위해 확보한 총예산
-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과학기술 연구비의 총액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합한 금액
-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 기관자체 예산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합
예) a(국책연구), b(민간기업 연구), c(대학 연구) 3개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a+b+c)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를 합한 금액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1.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 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
 -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 가.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 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제4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고제도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78. 9	• 대통령,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연구소 설립 권장
1979. 2	• 「민간연구소설립추진협의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前身)」 발족
1981. 7	• 과학기술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업무 개시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참여근거(기술개발촉진법) 마련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 신설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신설
1982. 5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상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 신설
1983. 9	•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실시
1985. 12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인적신고요건 완화(자연계 학사 5인 이상) • 정보처리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자연계 여부 불문)
1986. 1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참여근거(공업발전법) 마련
1986. 3	• 과학기술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관리 및 지원요령」 시행
1987. 1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 도입
1989. 12	•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업무의 민간위탁규정 신설
1990. 11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인적신고요건(자연계 학사 3인 이상) 마련
1991. 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처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업무 수탁·수행
1994. 5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 • 산업디자인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전담요원 자격 제한요건 완화
1998. 8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도록 조치
2001. 7	• 창업 5년 미만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인적신고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인적요건 완화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2005. 7	• 대규모 유통업 연구전담요원 7인 이하로 완화
2005. 10	•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정보처리업에 대해서 독립공간요건 완화
2009. 7	• 소기업 연구소에 인적신고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 2년간 한시 적용)
2010. 10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처리기간 단축(30일→10일)
2011. 1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통합관리 시스템 오픈(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완료)
2011. 3	• 연구원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창업 5년 조항 삭제
2011. 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 이관 • 지식기반서비스분야(11개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도입 • 소기업 인적신고요건 완화기간 연장, 중기업은 5인으로 환원(기 인정기업은 1년간 유예) • 연구원창업기업에서 연구원·교원창업기업으로 확대
2012. 9	•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인적신고요건 완화(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항구화)
2012. 10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경력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일자	주요 내용
201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으로 완화(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으로 완화(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전용면적 30미터 이하인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독립공간요건 완화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확대(출판업 등 5개분야)
201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허용(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201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マイ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1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근무경력 요건 제외 - 기능사 자격 보유자도 연구전담요원 허용(4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근무경력 필요)
20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인정처리기간 단축(10일→7일)
201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확대(금융 및 보험(산업) 등 3개 분야)
20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중·소·벤처기업 연구소의 독립공간요건 완화
202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확대(유통업 등 6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으로 완화(매출액 무관) • 연구소 상시 근무자 요건 명확화(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근거 마련(사업자등록증) • 변경신고 기간 연장(14일→30일)
202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소재지 연구소 중복 인정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 변경
20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자료 행정정보 연계 근거 마련
202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인정처리기간 연장(7일→10일) •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3인으로 유예기간 부여(소기업→중기업이 된 지 1년 이내 기업) • 연구전담요원의 근무장소에 대한 규제 완화(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 허용)

- 1978.9 : 대통령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연구소 설립을 권장하였고, 이는 정부가 민간연구소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됨
- 1978.12 : 상공부는 1979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상공부 고시 제78-35호) 발표를 통해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에 시험 또는 연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재료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추천하는 분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예외를 인정함
 - 이에 따라 공진청은 공진청 고시(제13,729호)로 '연구기관의 시험·연구용재료의 수입추천요령'을 공고함. 공고에서는 민간연구소란 '공진청에 등록된 연구소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신고절차를 규정함
- 1979.2 : 정부의 민간연구소설립 촉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당시 기술연구소를 자체 설립하여 운영하던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연구소설립추진협의회가 발족되고, 동 협의회는 1980년 2월에 사단법인 민간기술연구소협회로, 1982년 2월에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개편됨
- 1981.7 : 1981년 5월 상공부는 1981년도 하반기 및 1982년도 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상공부 고시 제81-19호) 발표를 통해 민간연구소에 대한 수입추천 승인권자를 공업진흥청장에서 과학기술처장관으로 변경함

- 이에 근거하여 과기처는 1981년 7월 민간연구소의 시험연구용 시설 및 재료 수입추천요령(과기처 고시 제33호)을 발표함. 동 고시에서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연구소란 '기술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독립된 연구시설 및 연구요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1981년 10월, '기술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와 '연구개발용 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제도 신설
 - 1981년 12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 1981년 6월,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신설
- 1982.5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촉진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법령상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이 신설됨
 - 1983.9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연구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신설됨
 - 1985.12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이 중소기업, 국외, 그 외의기업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과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각각 10인에서 5인으로 완화되고 그 외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준과 같이 10인으로 규정됨. 또한 '정보처리분야'의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의 전공기준을 자연계분야를 불문하는 것으로 완화함
 - 1986.1 : 공업발전법에 근거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상공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업 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동 사업 참여근거를 신설함
 - 1986.3 : 과학기술처 고시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관리 및 지원요령' 공고함
 - 1987.1 :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규정되고,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규정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연구 개발전담부서 신고제도가 새롭게 도입됨
 - 1989.12 : 기술개발촉진법상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근거와 기업 부설연구소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을 포함한 기술개발지원업무를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규정을 법에 신설함
 - 1990.11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적 요건을 3인 이상(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으로 완화하는 조문을 신설함

- 1991.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1994.5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완화하여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 전공여부 불문 분야를 '산업디자인분야'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함
- 1998.8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될 경우 연구전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01.7 :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인적요건이 연구 전담요원수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함)으로 완화됨
 - 벤처기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유형별 인적요건 기준에 벤처기업 인적요건 기준이 신설되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으로 규정됨
- 2005.7 : 대규모 유통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연구전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통점포'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수를 10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완화함(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1호)
- 2005.10 : '정보처리분야 소규모(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연구소는 벽면전체를 독립공간으로 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
- 2009.7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을 2년간 한시적으로(2009.7.1~2011.6.30)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함
- 2010.10 :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규·변경 신고 처리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교과부 고시 제2010-40호 제9조 개정)
- 2011.1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규·변경 온라인 업무처리를 시작함
- 2011.3 :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인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에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2001.7)'는 단서조항이 삭제됨

- 2011.7 :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정책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됨)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근거법령인 기술개발촉진법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기업부설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업무로 남게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근거법령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령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 2011.7 : 기존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인정하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분야에 '지식기반서비스분야'가 추가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분야가 제품개발과 지식기반서비스분야로 구분되었으며,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분야로 소매 등 11개 업종이 추가됨
 - 11개 업종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해당업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명시함
 - 11개 업종 선정은 R&D집중도가 높은 업종분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 등을 기준으로 함
- 2011.7 : 중소기업이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기업유형이 구분됨
 - 중기업은 2009년 7월에 시행된 한시적 인적요건 완화(2년간 3명으로 완화)를 종료시키고 5인 이상으로 변경함. 반면에, 소기업 기업유형을 새롭게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적요건 완화(2년간 3명으로 완화)를 2년간 추가로 연장(2011.7.1~2013.6.30)함
 -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원까지 포함함
 - 2012.9 : 소기업에 대해 2년간 한시적(2011.7.1~2013.6.30)으로 인적요건을 3명으로 완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소기업의 인적요건을 3명으로 항구화함
- 2012.10 : 중소기업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함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충분한 연구역량이 있음에도 학력의 제한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되지 못했던 인력들이 혜택을 받게 됨
- 2014.1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독립공간 요건을 완화함
 - 지식서비스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기존 11개 분야에서 5개 분야(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관련서비스업)를 추가하여 총 16개 분야로 확대함.
 - 또한,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의 연구전담요원 7인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기존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2015.3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함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소기업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허용
- 2015.9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연구소 근무경력 미보유자도 해당 연구개발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개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2016.10 :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규·변경 신고 처리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함(미래부 고시 제2016-110호 제3조 개정)
- 2017.9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존 16개 분야에서 3개 분야(운수 및 창고, 방송, 금융 및 보험)를 추가하여 총 19개 분야로 확대함
- 2019.12 :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 2020.3 :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통업 등 6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로 확대함
 -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과 상관없이 인적요건 7명으로 일원화
 - 2개 소재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각 소재지에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상시 근무토록 연구소 상시 근무자 요건 명확화
 - '연구분야 관련성'에 대한 부가조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단순화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증명서류 제출 근거 마련(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 연구전담요원이 해당 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에 관한 근거 마련
 - 변경신고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
 - 연구시설현황에서 연구기자재 품명 및 모델명 항목 삭제
- 2021.6 : 기업부설연구소가 동일 소재지에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신고서식 변경
 -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중 연구개발경력 관련 중복된 조항 삭제

- 2021.12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022.6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처리의 근거 마련
- 2022.8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및 기업 서류제출 부담 등 완화
 - 설립 또는 변경신고 처리 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변경
 -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를 사후관리 시 확인사항에서 삭제
 -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중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이면 인정(영 제16조의2)

3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시행 및 확대

❖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시행(2011.7)

- (배경) 기존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였으나, 민간 R&D 활성화 대책(2009.7) 위기관리대책회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2010.9)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 결정
 - 이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기초로 소매 등 11개 업종분야를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분야로 선정하고, 시행령 개정 시행

※ 시행령 제2조(정의)에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규정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매	4711, 4731, 4781, 4791
정보서비스	6311 ~ 639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7211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 지식서비스 인정분야 확대(2014.1.1)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확대 추진
 - 기재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경제관계 장관회의, 7.4)에서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촉진
 - *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기재부,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7.11)에서 (인문·기술 융합 촉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

- 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하여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를 위하여 광고업, 영화 등 제작 및 배급업, 출판업, 부가통신업,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 추가

시행(2011.7 (11개 분야))	확대(2014.1 (16개 분야))
위생서비스(산업), 소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교육기관(산업), 의료 및 보건(산업), 문화서비스(기타)	출판,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 광고,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등 5개 분야 추가

❖ 지식서비스 인정분야 확대(‘17.9.15)

기준(2014.1 (16개 분야))	확대(2017.9 (19개 분야))
위생서비스(산업), 소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교육기관(산업), 의료 및 보건(산업), 문화서비스(기타), 출판,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 광고,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운수 및 창고(산업), 방송(산업), 금융 및 보험(산업) 등 3개 분야 추가

❖ 서비스 분야 명칭 변경 및 인정분야 확대(‘20.3.3)

- 과기정통부,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 추진
 -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명칭 변경
 - 유통업 등 6개 분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도록 확대
 - * 일반 유통주점업, 무도 유통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기준(2017.9 (19개 분야))	확대(2020.3 (6개 분야 제외 대부분 분야))
위생서비스(산업), 소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교육기관(산업), 의료 및 보건(산업), 문화서비스(기타), 출판,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 광고,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운수 및 창고(산업), 방송(산업), 금융 및 보험(산업)	일반 유통주점업, 무도 유통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가능

4

서비스 분야 R&D 정의 및 사례

❖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정의

-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

❖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활동 범위

- 제품에서 서비스로 연구개발활동이 확장되는 관점에서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활동 내용과 목적을 나눌 수 있음
 -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활동 내용은 제조업 연구개발의 요소기술개발에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와 기개발 기술의 접목·활용이 추가됨
 - 연구개발 목적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순수 서비스 개발,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 개발이 포함되고, 서비스 생산 및 전달 개선에 서비스 생산 개선, 전달 및 인터페이스 개선이 포함됨

〈서비스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정의
36. 수도업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함에 있어 새로운 정수처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사람 및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함에 있어 폐수처리시설 공정을 개선하거나 신공법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금속 부스러기 등),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이차 원료)로 전환함에 있어 건설폐기물 처리 연구, 건축물 철거 처리 관련 연구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오염된 건물,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함에 있어 새로운 토양정화 기법 개발이나 수처리 엔지니어링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함에 있어 자동차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자동차 판매 app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정의
46~47. 도매 및 소매업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함에 있어 주문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주문 인터페이스 개선, 마케팅 솔루션 개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49~52. 운송업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함에 있어 물류정보시스템 지능화 기술 개발, 분류시스템 효율화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55. 숙박업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을 단기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새로운 객실 상품과 운영 솔루션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56. 음식점 및 주점업	점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점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제공함에 있어 주류 디자인 개발, 새로운 조리법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58.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 일반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함에 있어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OSMU), 북테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과 관련된 필름 가공, 더빙 등의 제작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영상관련 기술연구 및 영상분석 알고리즘 을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60. 방송업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가입형 또는 유료제 등 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등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실시간 방송기술 개발, 디지털 광고 플랫폼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61. 우편 및 통신업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 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음성우편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트래픽 보정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공급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 및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운영관련 기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함에 있어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운영체계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63. 정보서비스업	자료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 제공함에 있어 광고 상품 패키지 개발, 멤버십 서비스 인증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정의
64~66. 금융 및 보험업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거나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보험 또는 연금 기금을 모금, 운영함에 있어 핀테크, 송금서비스 솔루션, 투자안정성 평가 및 신규 금융서비스 연구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68. 부동산업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 혹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거나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시가격 산정 모형연구, 자동가격산정모형 구축 및 개선, 가격공시제도 관련 연구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70.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 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 연구,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실험 개발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 미생물 서비스 솔루션 개발, 개인맞춤형 진단 플랫폼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71.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서비스 개선, 온라인 광고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 디자인 및 효과 연구,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 광고이용자 성향분석, 기업의 위험관리 및 문제해결 관련 솔루션 연구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설계, 감리 등의 건축 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 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업종별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연구, 신기술 및 신공법 연구, 각종공법 분석 및 품질관리 대책과 활용방안 연구, 건설하자 원인별 분석 및 개선 관련 연구, 디지털 제조업 기술, 서비스 품질향상 및 표준화 관련 연구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 활동과 축산 동물 및 애완 동물 대상 수의 서비스, 사진 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매니저업 및 물품 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등의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 안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신규 디자인 개발, 멸종위기 생물종 및 서식처와 생태계 복원기술, 녹지보전 관련 연구 등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함에 있어 아파트 관리서비스 개발, 친환경 방역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정의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콜센터 운영 방식 개발, 고객상담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76.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함에 있어 식기렌탈 솔루션 개발, 자동차 임대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85. 교육서비스업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 신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편의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수요맞춤형 과정 개발, 교육/교수이론 연구 및 학습지와 교재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86. 보건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 국내, 국외 헬스케어 및 기술동향 파악 및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출, 병원 혹은 검진기관과 연계한 의료플랫폼 개발, 의료 관련 보안취약점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연구, 의료 및 보건관련 통계 분석, 사업장 보건매뉴얼 관리, 원스톱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 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발, 초기치매환자 재활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 미술작품 개발,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 종목별 VR 장비 개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활동

❖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사례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기재부·과기정통부·STEPI, 2021)

〈서비스 연구개발 유형〉

유형	정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서비스를 창출 (예: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안전정보 서비스 창출) ▶ 기존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서비스를 개발 (예: 실감형 e스포츠 중계서비스 개발) ▶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서비스를 구축 (예: 사기유형에 대한 분석 토대로 결제사기방지 서비스 구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서비스의 품질 향상 (예: 빅데이터를 통한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 품질 향상) ▶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효율화 (예: 물류 추적 플랫폼을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 (예: 홈페이지 배열체계의 변경 통해 전달체계 새롭게 구축)
제품-서비스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장) ▶ 새로운 서비스에 부수적인 제품 개발 (예: 가상현실 테마파크 안내서비스에 부수적인 로봇 개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생산·소비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한 이해목적의 연구, 특정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개선에 필요한 공통지식·도구 개발 등

〈서비스 연구개발 유형 예시〉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관광
사례명	취약계층 관광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보행 약자, 유아 동반 가족,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 취약계층 관광 행동 패턴 분석, 유형별 맞춤형 관광 DB 구축 및 웹서비스 개발, 실내위치 및 상황인자 감지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원활한 관광 향유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 이용 영·유아 동반 가족이 관광 활동에 있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무장애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관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가짐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콘텐츠
사례명	실감형 e스포츠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스포츠 산업이 급증하면서 동영상 플랫폼, 게임 중계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의 공유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플랫폼의 개발도 게임 산업 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 e스포츠의 고품질의 실시간 대화형 가상현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가상현실 서비스용 영상 획득/생성/관리 기술, 전송을 위한 서버기술, 실감형 대화형 클라이언트 기술을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2D 단일 영상 중심의 e스포츠 중계 방식과 대화형 가상현실 플랫폼을 결합하여, 실시간 가상현실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e스포츠 가상현실 중계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른 고화질 가상현실 스트리밍까지 확장 가능성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스포츠
사례명	스크린 골프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골프 서비스는 국토 면적이 좁아 골프장이 작고, 회원권 등 골프장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비용이 고가이며, 이로 인해 골프 서비스 확대와 대중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스크린에 실제와 유사한 환경의 골프 서비스 화면을 띄워서 가상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의 골프 감성에 관한 연구, 센서 기술, 시뮬레이션 구현 기술 등을 접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서 기술, 시뮬레이션 구현 기술 등을 골프와 접목하여 개발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존 오프라인 골프 코스 이용과 유사한 감성과 느낌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보건
사례명	해외 환자 유치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유럽·중동·러시아·아프리카 등의 부호를 대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시행 해외 부호를 대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치료의 전 과정을 표준화·프로세스화·자동화하고, 환자의 귀국 후에도 온라인으로 사후 의료서비스를 제공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환자에 대한 치료 전 과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외 의료 환자 유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 표준화·프로세스화·자동화를 통해 국내 의료진-외국 의료진-환자 간 사후 교류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보건
사례명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사는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 또한, 암 치료 이후 퇴원하는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질병 관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건강정보 통합관리 및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신시장 창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질병 예방과 맞춤형 진료가 가능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공간정보
사례명	맞춤형 산악기상·기후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지역 기상관측 신경망 인프라 확대를 통해 산림관리, 산림재해 방지, 기후변화 감시, 산림휴양 등 산림이용객 맞춤형 기반자료를 생산하고 제공 산악지역의 이상기상 현상 구명을 통해 산림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반자료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악지형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통해 산림재해 예측력 향상과 대응력이 강화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산악기상 서비스를 제공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공간정보
사례명	불볕더위 분야 재해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볕더위 및 열대야와 관련한 도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세 시공간 빅데이터(기상·사회·경제·환경·통신)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산출하는 모델 개발 상세 시공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인구집단 및 부문의 불볕더위 재해의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불볕더위 분야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 불볕더위 영향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상세지역별·취약집단별·부문별 맞춤형 재해 현장 대응이 가능해짐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유통
사례명	인터넷 쇼핑몰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사는 쇼핑몰 시스템 개발에 앞서 기준 사용자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분석 실시 구매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쇼핑하는 즐거움이, 판매자는 자신의 매장을 차별화하려는 욕구가 인터넷 쇼핑에서는 해결되지 않음을 발견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 사이트 개발 이전에 인터넷 쇼핑 고객 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을 발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쇼핑몰 사용자에 대한 비기술적 연구 방법을 활용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유통
사례명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사는 고객의 취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AI가 고객 취향에 맞는 옷을 추천하면 스타일리스트가 5개의 의류를 선정하여 배송해주는 서비스 개발 S사를 처음 방문한 사용자는 가장 먼저 문답형 개인신상 및 취향 조사를 위한 스타일 프로파일링 과정을 거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의류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선정된 의류 또는 의류 아이템들을 사용자의 집으로 배송하고, 원치 않는 의류 또는 아이템은 반송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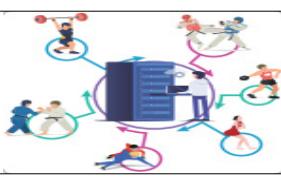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교육
사례명	1인 문제집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학생 개인의 학습 결과와 과정까지 확인·진단하여 개개인별로 최적의 교육 처방 제시 정·오답 분석 비율, 주제별 점수 변화 추이 등을 근거로 학생별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화된 1인 문제집을 온라인으로 제공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학생에게 특화된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연구개발하여, 차별화 되지 못했던 기존 문제집 시장의 한계를 개선 학생들이 개개인에 대해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 가능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디자인 콘텐츠
사례명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새로운 특수효과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심판(사건번호: 조심2017서0262(2018.09.05.))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새로운 특수효과 개발을 연구개발로 인정 처분청은 영상 제작을 위한 특수효과 작업이 고유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산출물로 봄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하여 기존 다른 영상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수효과 개발 새롭게 디자인한 특수효과를 구현하여 영상물을 생동감 있게 제작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종	금융
사례명	결제 사기 대응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인 P사는 전 세계 온라인 결제에서 발견된 특징을 사기 유형과 비교 분석한 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개발 자체학습모델(딥러닝)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계정을 분석하여 금융 결제 사기 활동을 예방하도록 지원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딥러닝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결과 새로운 결제 사기 대응 서비스를 개발 서비스 개발을 토대로 미국의 평균 사기 손실 비율에 비해 낮은 손실 비율 달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업종	관광
사례명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A사는 초과예약으로 객실이 없어 돌아가거나, 예약한 호텔 대신 이용 가능한 다른 호텔로 이동해야 하는 고객의 불쾌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 연구결과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모양 및 형태, 온도 수준, 조명의 세기 및 향기 등이 고객의 불편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예약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구 분석하여, 고객의 불쾌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고객 불쾌감 감소를 통해 추후에라도 호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업종	콘텐츠
사례명	상호작용 콘텐츠를 통한 전자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와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 K사는 비디오, 음성, 이미지 등을 전자책에 삽입하는 양방향 솔루션을 개발하여 움직이는 그림책 발간 Y사는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터치, 녹음, 증강현실 등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교재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텍스트만 전달되던 전자책 서비스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전달체계를 개선 기업별로 특화된 전자책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유 고객층 확보 가능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업종	스포츠
사례명	스포츠이벤트 관리 서비스의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이벤트 매니지먼트의 전 주기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경영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표준화 연계 개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의 스포츠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체계 및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합 플랫폼을 토대로 기존 스포츠 이벤트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 스포츠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체계를 수립하고 표준화 기반을 마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업종	보건
사례명	치과 진료 서비스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병·의원 중 치과는 진료 과목의 특성상 치료에 대해 많은 환자가 불안함, 두려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치과 이용에 대한 많은 환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치과 진료 환경에 관한 분석 연구를 실시 치과에서 조명 밝기와 조명 종류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 밝기·종류 등의 변화를 통해 기존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치과 진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치과 치료 과정이나 재료 자체에 변화를 주기 힘든 상황에서 진료 환경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손쉽게 서비스 품질의 제고가 가능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업종	유통
사례명	커피 제조 프로세스의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두를 꺼내기 위해 계산대 아래로 허리를 구부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두의 저장 위치 변경 및 커피별로 보관 체계를 개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사는 매장 직원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Lean 시스템 기법을 미국 1만여 매장에 도입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커피 제조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커피 제조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미국 S사가 보유한 전체 매장으로 확대 적용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업종	교육
사례명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개발 및 강의전달체계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때 성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의 전달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각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강의실에 있는 학생이더라도 맞춤형으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용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의 강의 전달체계를 효율화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중도탈락하지 않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업종	사회복지
사례명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우울증 발생 감소를 위한 환경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우울증 발생 감소를 위한 생활공간의 디자인 패턴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 생활공간의 형태, 디자인, 색채, 패턴 등 다양한 요소들과 입소자의 우울증 간 관계를 연구하고, 우울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양시설 디자인 패턴을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디자인 패턴을 기준 요양시설에 적용하여 전달체계를 개선 인문사회학적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관광
사례명	펜스 주행형 로봇-가상현실 테마파크 안내 융합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접촉 거리 센서 및 접촉 센서를 이용한 충돌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상하좌우로 고개를 이동할 수 있는 펜스 주행형 로봇 개발 가상현실 체험기기 사용자의 반응(몸짓, 표정, 음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조언 및 격려를 하며 흥을 돋우도록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펜스주행형 로봇의 개발과 함께 가상현실 테마파크에서 게임기 사용자 흥을 돋우며, 새로운 손님을 모으고 가이드 임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이룸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콘텐츠
사례명	태블릿 PC-전자책 서비스 융합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A사는 자사의 전자책 서비스에 특화된 태블릿 PC를 개발 태블릿 PC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사가 개발한 전자책 서비스에 특화되도록 설계 태블릿 PC의 성능을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으로만 최소화해서 전자책 서비스만을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가격경쟁력을 갖춤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전자책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을 서비스에 특화하는 방법으로 전달체계를 개선 서비스 판매와 제품 판매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보건
사례명	스마트 측정기기-반려동물 건강관리 융합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측정기기로부터 전송되는 반려동물의 활동량, 건강 상태 데이터(맥박, 스트레스 정도, 자율신경계 균형, 체온 등), 위치정보 등을 모바일 앱에서 모니터링 AI 기반의 웹 서버를 통하여 건강 상태를 분석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도 동시에 개발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산업 시장의 증가 속에서 인체에 적용되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반려동물용 서비스 개발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유통
사례명	자사 하드웨어-쇼핑 서비스 융합을 통한 쇼핑몰 접근방식 개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쇼핑업체인 A사는 브랜드 제품별 상표가 표시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제품을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대시버튼에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고객들이 버튼을 눌러 주문 정보를 생성하면, 태블릿 PC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주문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시버튼,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제품과 특정 기업의 쇼핑서비스를 융합하여 연계된 쇼핑몰 접근 방식을 개선 간편한 주문을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인공지능-쇼핑몰 융합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공간정보
사례명	CCTV-도로정보 서비스 융합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도로에 설치된 교통감시용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 전방 도로 위험 기상 및 노면 상태 정보를 생산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한 기상 상태(비, 눈, 안개) 및 노면 상태(적설, 물 고임, 얼음) 분석으로 복합기상(안개+눈, 안개+비) 형태의 분석 정확도 향상 서비스 구현을 위해 웹 및 앱을 통한 Open API 시스템으로 실시간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시범서비스)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CCTV에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실시간 전방 도로 상황 정보 제공으로 도로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 안전성 향상, 제설제 비용 절감 등 효율적 도로 관리 기능 향상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금융
사례명	스마트폰-간편결제 서비스 융합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사와 L사는 자사의 스마트폰에 특화된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 간편결제를 위한 페이서비스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시켜 놓고, 결제 시 휴대전화를 카드단말기와 접촉하면 결제가 됨 기존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되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단순 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융합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고유 수요계층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기존 제품의 경쟁력도 향상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디자인·보건
사례명	차세대 유방암 조기 진단기-인체공학적 디자인 서비스 융합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진단기 작업 시간 단축 및 오작동률 감소를 위해 환자·진단기 작동 의료인의 촬영 작업 프로세스에 특화된 차세대 유방암 조기 진단기의 디자인을 개발 진단기 촬영 작업 시 시각적 피로도는 낮추고 가시성은 높이는 핵심 색상 (key color)을 분석하고 작업 흐름에 맞춰 진단기에 적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유방암 진단기와 연계하여 새로운 의료맞춤형 디자인 서비스를 개발 합리적인 가격과 환자중심의 제품 설계로 암 진단기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정밀한 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 융합		업종	안전
사례명	증강·가상현실 시뮬레이터-재난 대응 통합훈련 시나리오 융합 서비스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훈련의 현실감을 높이며, 재난 대응 훈련 비용의 절감을 위해 증강·가상현실 기술을 훈련에 접목할 필요가 있음 증강·가상현실 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실제 데이터베이스(울산시 등)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반영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 댐 붕괴, 다중이용시설 붕괴 등의 여러 복합 재난 시나리오를 포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응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와 증강·가상현실프로그램을 융합개발하여 새로운 재난대응 서비스를 개발 현실과 가상 세계의 접목으로 재난 대응 통합훈련 프로그램의 집중도·훈련 효율성·현장 대응 능력의 향상, 훈련 비용 감소, 훈련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 		

❖ 서비스 산업별 연구개발 예시(STEPI(2020),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1) 수도업

○ V사 예시

- (서비스 개요) 전 세계 각 국의 도시와 산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설계, 시공, 서비스 부품 공급, 물 진단 및 사업장 방문, 수처리 케미칼,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등 물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R&D) 에너지 관련 스마트 모니터링 센터(Hubgrade) 개발, 냉각시스템용 스마트 약품주입 및 모니터링 기술(Aquavista 5C) 개발
 - (Hubgrade) 물, 폐기물, 에너지 관련 스마트 모니터링 센터로 분석 전문가가 건물 전체의 에너지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원격 관리를 실행하여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 시키는 시스템
 - 도시 상수도 시설, 급수망, 재활용 시설, 지역 냉난방 시스템, 공장, 빌딩 등 시스템에 스마트 센서를 달아서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에너지 전문가가 분석하는 시스템
 - (Aquavista 5C) 냉각 시스템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화학적 조치를 유도하는 자동화 기술로 냉각탑 내 부식이나 침전, 악취, 미생물 생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깨끗한 원수(source water)의 활용 최적화 및 냉각시스템 효율 극대화

(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T사 예시

- (서비스 개요) 환경기초시설 최다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폐수처리 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 투자사업을 진행 중
- (R&D) 발전용수처리 개발기술인 FilONE, MDI 등을 개발하였으며 하폐수처리 기술인 TSK-MBR, TSK-ESS, TSK-DAF 등의 기술을 개발함
 - (FilONE) 친수성, 내오염성, 내화학성의 한외여과 분리막을 이용한 고유량(High Flux)과 낮은 운전압력의 한외여과공정기술
 - (MDI) 이온교환수지와 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전기재생식 탈염공정의 초순수 제조기술
 - (TSK-MBR) 차아연소산나트륨(NaOCl)으로 처리한 슬러지와 침지형 분리막을 이용한 질소·인처리 최적화 기술
 - (TSK-ESS) 하수처리장 전력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송풍기의 전력을 절감하는 IT기반의 지능형 제어시스템으로 하수처리장 송풍기 전력의 10% 이상을 절감하여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4%를 절감하게 하는 기술

- (TSK-DAF) 기·액 혼합펌프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가압부상공법으로 반영구적 노즐을 활용하여 교체가 불필요하며, 현장 맞춤형 미세조정이 가능하고 기존 기술 대비 전력비가 30~40% 절감되는 기술

(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K사 예시

- (서비스 개요)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지, 폐목재, 폐섬유 등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솔루션 제공 및 지정폐기물, 폐수 처리, 금속재활용 서비스 제공
- (R&D) 폐기물 및 폐수처리 최적화, 자원회수공정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 (폐기물 및 폐수처리 최적화) 각종 유해 폐기물 및 폐수의 성상에 따른 철저한 연구분석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최적의 처리방법 개발
 - ISO9001, ISO14001, OHSAS18001등 국제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통합관리형 시스템인 QHSE 시스템을 독자개발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와 산화동 샌상 및 기타 서비스에 적용중
 -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로 상시 측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감시하는 굴뚝자동특정시스템을 개발
 - (자원회수공정)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최적의 재활용 원료 선별, 품질 향상 및 무한자원으로서의 가치 창출 연구
 - (신재생에너지기술)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 및 친환경 시스템 개발

(4) 환경정화 및 복원업

○ D사 예시

- (서비스 개요) 오염부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복원조사, 타당성평가, 정화사업설계, 정화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
- (R&D) 고효율 경작시스템(Matrix Enhanced Treatment System, YUBA-160), 통합 모듈화 지중정화 시스템
 - (고효율 경작시스템) 토양경작법과 생물학적 분해법(biodegradation)의 장점을 접목한 최신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토양의 파쇄과정과 영양분 및 미생물재생 투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일반적인 토양경작보다 훨씬 적은 면적과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복원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개발

- ISO9001, ISO14001, OHSAS18001등 국제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통합관리형 시스템인 QHSE 시스템을 독자개발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와 산화동 생산 및 기타 서비스에 적용중
-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로 상시 측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감시하는 굴뚝자동특정시스템을 개발
- (통합모듈화 지중정화 시스템) 장기간 현장적용 노하우를 토대로 효율이 입증된 각 단위공법의 정화모듈(토양증기추출법, 생물학적통풍법, 에어스파징, 다중상추출법)을 대상 부지 조건이나 오염현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토양 및 지하수를 자동정화 처리하도록 설계, 제작됨

(5)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 I사 예시

- (서비스 개요) 자동차 관련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으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자동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
- (R&D) 자동차 구매 및 판매, 딜러별 판매실적, 고객관리, 서비스, 재무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판매관리 시스템 개발
- (CRM)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구매한 차량 등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를 돋는 시스템 및 판매자별 고객관리 정보가 공유되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 (차량판매) 고객에게 가장 좋은 구매옵션을 제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며, 어떤 가격조건이 가장 좋은지를 분석해주는 시스템
- (재고관리) 현재 어떤 재고가 있으며, 구매금액과 유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줌

V
부
록

(6) 도매 및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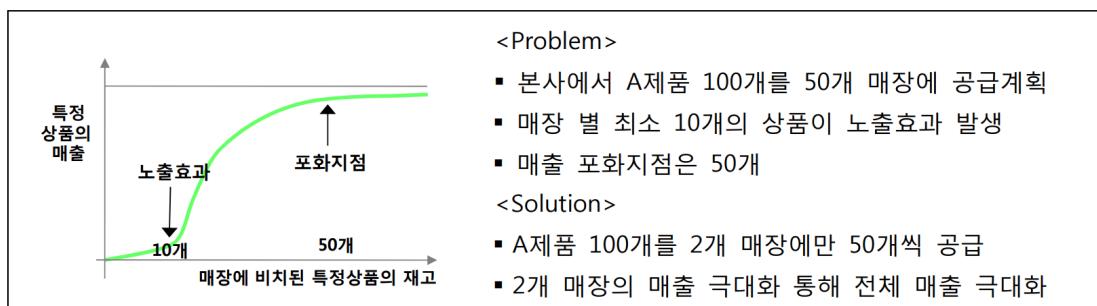
○ Z사 예시(이은경, 2011)

- (서비스 개요) 스페인에 기반을 둔 인디텍스(Inditex)그룹의 의류 브랜드인 Z사는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SPA 브랜드 기업으로 고객 정보 수집을 위한 IT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의류 디자인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함
- (R&D) Z사는 패션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디자인·생산·유통 프로세스를 혁신함
 - (디자인 프로세스) 매일 매장 판매기록을 저장·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매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수집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개발함
 - (생산 프로세스) 다품종 소량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직계열적으로

일괄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급 프로세스를 구축함

- (유통 프로세스)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POS(Point On Sale)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럽은 평균 24시간, 미국 및 아시아는 평균 48시간 내에 제품이 도착함
- (제품 유통 알고리즘 개발) Z사는 빠른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MIT공대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 산출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유통 알고리즘을 개발함
- 상품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제품이 최소한 노출되어야 하고(노출효과), 어느 정도 상품 노출되면 더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음(포화현상)
- 아래 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정 재고 산출 알고리즘은 진열 상품수와 매출 간의 포화지점을 파악해서 전체 매출 최적화를 위한 매장별 재고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임

〈적정 재고 산출 알고리즘〉



자료: 김철원 외(2011: 5)

○ L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개요) L사는 소매 및 유통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의류, 잡화, 가전, 가구, 보석, 식품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음
- (R&D) L사의 R&D는 신규시장을 개발하는 신규해외본부와 기획부문, 상품전략담당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신규 해외시장 진출 절차 표준화) 집중화, 현지화, 차별화 등 3단계의 표준화된 절차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함
 - (성장성 높은 새로운 업태 등 다양한 소매업 모델 개발) 영플라자, 명품관,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업 모델을 개발하며 신규 출점시 인구규모, 인구구성, 소득수준, 소비수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줌

〈L사의 신 서비스 현황〉

유형	특징
퀄리티 프라이스 존 (Quality Price Zone)	라이프 스타일 샵을 비롯하여 동일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
매스티지 존 (Masstige Zone)	대중 수입 브랜드로 구성
프리미엄 MD	A급 명품 브랜드의 개발 및 확대
홈토탈전문샵	식품 및 가정상품군의 경우에도 고급화 및 VMD를 한층 강화
영 MVG제도	20대중 구매력 높은 층을 별도 선정 및 관리 상시 할인, 영 라운지 이용, 문화행사 초청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카테고리 킬러 (Category Killer)	유사한 컨셉과 테마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 중심의 매장
VVIP대상 서비스	타운카 서비스 최고급 승용차를 제공,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퍼스널 쇼퍼 서비스 개인별로 쇼핑 아이템을 구성해주는 서비스

자료: 장병열 외(2009).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R&D 활동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 운송업

○ 화물운송 온라인 중개서비스(화물운송정보망)(박정수 외, 2014)

- (서비스) 화물운송시장의 참여자는 화주, 운송 주선업체, 운송업체, 개별 차주 등으로 나눠지며 개별 차주들은 영세사업자에 속함
 - 이는 주선업체나 운송업체 등 규모가 큰 참여자의 역할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며 이들이 다단계 거래 등 복잡한 운송거래 구조를 형성하게 됨
- (R&D) 이와 같은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화물 직거래 정보화를 위해 등장함. 화주, 차주, 운송업자 등이 온라인상에서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 약 30~40개 업체들이 화물운송정보망 서비스를 제공 중

○ D사, A사, G사 등(박정수 외, 2014)

- (서비스)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특송서비스를 제공
- (R&D) 1인 가구 등을 위한 무인택배시스템 및 드론을 이용한 무인 배송시스템 개발
 - (무인 배송 시스템) A사가 2013년 12월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G사도 자체 무인 배송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고 D사도 유럽에서 무인 헬기를 이용해 원격배송 프로젝트를 테스트 중이나 향후 국가별 민간 무인항공기 운영에 대한 규제 개선, 배송가능 물품 중량의 한계, 시스템 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U사 예시(김승민, 고대영, 2018)
 -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탑승이 필요한 사람과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 (R&D)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시장을 창출, 총 13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에 관한 특허 확보에 집중 중
 -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강화 및 특허 소송으로부터 보호
- A사 예시(김승민, 고대영, 2018)
 - (서비스)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 (R&D) '원클릭' 서비스 등이 대표적임
 - (원클릭 서비스) 고객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때 개인정보를 저장해두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주문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아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인함
- A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국내선 및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R&D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음
 - (R&D) 세계최초 인터넷 체크인, 수화물 위치추적 서비스, 항공+의료 통합 서비스 등 체크인 관련 서비스, 최적 식사주기 및 제공시간 연구, 항공기 최적 좌석 가격 책정 연구, 무인자동 탑승수속시스템, 대고객 접점서비스 제공

〈A사 고객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A사 라운지서비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라운지,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 등을 비롯하여 Star alliance 해외라운지를 이용가능 하도록 고객서비스 제공	
인터넷 좌석배정	항공편 출발 예정시간 48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인터넷좌석 배정 및 인터넷 탑승권을 발급 가능하며, 항공기 출발 328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좌석예약 및 탑승권 교환증 발급 가능	
셀프체크인 서비스	공항에 설치된 체크인 서비스기기를 이용하면, 카운터 앞에서 대기하지 않고 원하는 좌석을 직접 선택하여 체크인 가능	
외투보관 서비스	겨울철 동남아 등 더운 지역을 여행하는 고객에게 무거운 겨울용 코트 등을 무료로 보관해 주는 서비스	
기내식 서비스	계절성을 살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건강을 고려한 한식, 양식, 중식 메뉴로 구성된 기내식 제공	
특별 프로 그램	차밍서비스	메이크업 서비스, 마스크팩 서비스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생일 및 기타기념일 축하서비스, 매직쇼, 캐릭터서비스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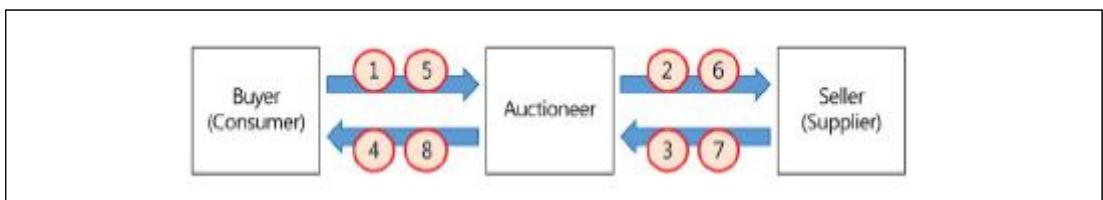
자료: 장병열 외(2009)

(8) 숙박업

○ P사 예시(김승민 · 고대영, 2018)

- (서비스) 호텔에서 예약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역경매 방식의 예약 중개 서비스 제공
- (R&D)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역경매 방식의 예약중개 서비스 제공
 - (역경매 방식 예약중개 서비스) 여행객이 자신이 원하는 항공일정이나 숙박지 위치, 호텔 등급 등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검색하면 이에 맞는 호텔의 제안내역을 보여주고 결제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역경매 방식 예약중개 서비스의 예시〉



자료: 김창희·이규석·김수욱(2016)

(9) 음식점 및 주점업

○ P사 예시(조준상, 2011)

- (서비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기업이며 외식 서비스를 제공
- (R&D) 복잡다양화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소비자 패널조사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및 국내 소비자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며, 소비자 패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커피나 샌드위치 등 브런치 제품등을 다른 베이커리에서 취급하지 않을 때에도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도입하여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현재는 모든 베이커리에서 취급하고 있음
 - (베이크오프 시스템) 판매공간과 주방 사이를 오픈하여서 시각적으로 주방을 확인시켜주는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음
 - (쿨팩 시스템) 재료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도와 보관시간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원재료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고 저온 물류배송을 통한 수송 및 배송의 효율성을 증가시킴

(10) 출판업

○ C사 예시

- (서비스) 1974년 단행본 출판을 시작한 이래 문학, 인문사회, 교양, 어린이·청소년, 교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판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R&D)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방식의 출판매체 개발 외에 시(詩) 어플리케이션, 독자들이 자유롭게 서평이나 창작물을 올리고 그것이 반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잡지 개발
- (문학 3) 연 3회 발간되는 「문학 3」은 기존 출판사들의 잡지와는 달리 독자들이 직접 창작물이나 창작물에 대한 서평을 기고하고, 문학 3 사이트를 이용하는 독자들이 편집 회의에 참여해서 잡지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등 독자와 출판사가 함께 만드는 방식의 새로운 문예지를 개발함(김지선·구유리, 2018)

〈문학3 구성요소〉



자료: <http://www.munhak3.com>

○ B사 예시

- (서비스) 병원, 의원, 약국, 공공보건 등 의료 관련 전산화 소프트웨어 제공
- (R&D)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 정보시스템, 원격진료서비스 등 개발
 - (CLEMER)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 정보시스템으로 다양한 병원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하며, 병원에서 하는 원무, 진료기록, 진료지원, ERP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효율화해서 병원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도움
 - (BITCare Plus)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현지 의료인이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의료인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해서 협진을 하는 시스템. 원격처방전, 병원 데이터 연동 등을 구현하여서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함(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 N사 예시(최지선·김형진, 2010)

- (서비스)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발사이자 게임업계 선도기업에 해당함
- (R&D) 게임업계의 대표기업중 하나로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도 R&D 투자비중이 월등히 높음(약 37%, 동종업계 타사는 10% 내외)
 - (타 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보완) 다른 분야의 신기술(그래픽, 네트워크 기술)학습을 통한 자사 콘텐츠 보완하며, 기업 내/외부의 기술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술개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하여서 기업 내에 전파함

(11)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C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고품질의 선진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에 최초로 보급, 단일관 위주의 영화상영관 문화를 선진화시켰으며 영화업계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있음
- (R&D) 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고객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있음
 - (고객에 대한 연구 및 입지조건 연구)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ex. 사전예매 이용객의 특성, 멤버십 이용실태 등), 신규 영화관 입지 선정시 지역분석, 타 지점 입점현황 분석 등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신규 서비스 런칭) 골드클래스, IMAX, Cine De Chef 등 신규 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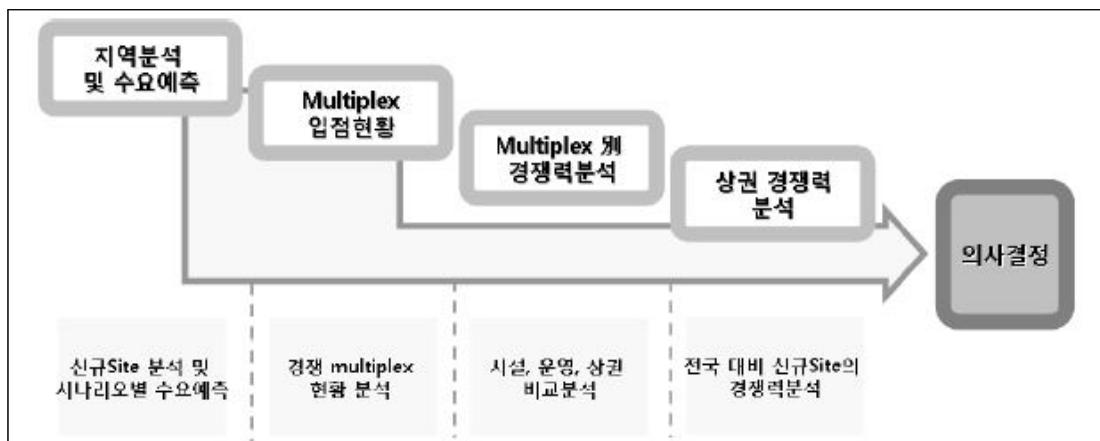
V
부
록

〈C사의 신규서비스〉

신 사업명	사업내용
골드클래스	안락함이 묻어나는 최고급 가죽소파와 영화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 전용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극장
IMAX	블록버스터 영화를 초대형 스크린에서 2D, 3D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관
Cine De Chef	품격높은 유러피언 스타일의 레스토랑과 국내최고의 영화관이 결합된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공간
무비 끌라쥬 (Movie Collage)	작품성 높은 비주류 영화를 단독 발굴하여 인디영화 전용 상영관과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디영화 전용관 확대
Smartplex	Edutainment Contents를 통해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미래형 상영관
Starium	극장의 본질은 3S(Screen, Sound, Seat)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개발된 디지털 프리미엄 영화관

자료: 장병열 외(2009)

〈C사의 신규 입지 개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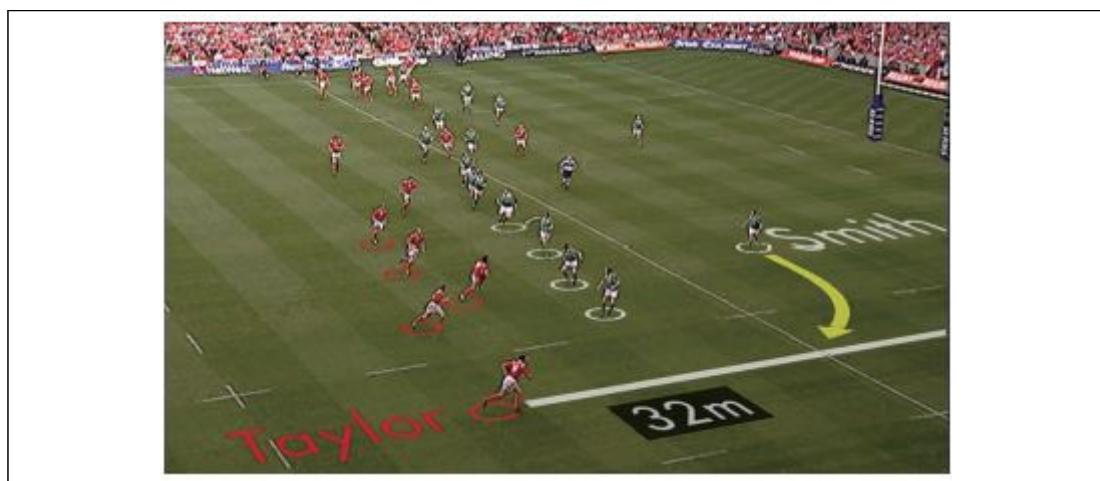
자료: 장병열 외(2009)

(12) 방송업

○ B사 예시(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 (서비스) 영국의 공영방송국으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방송 관련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으며,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대서양 TV 송출, 문자다중방송 시스템 최초 도입 등은 전세계 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함

〈그래픽 효과를 추가한 스포츠 경기 화면〉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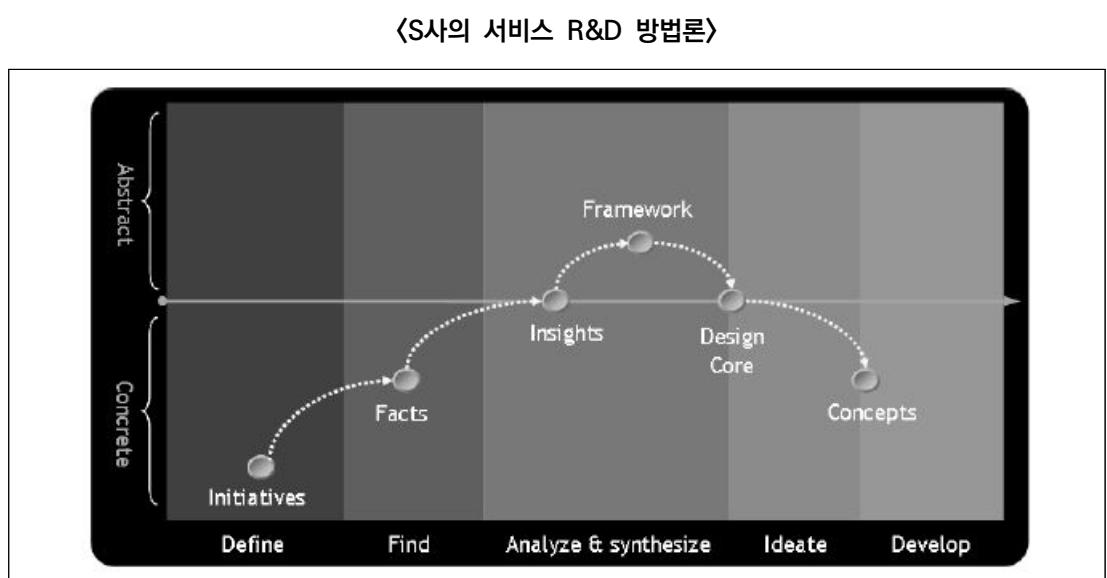
- (R&D) 공영방송국으로써 공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시청자와 사회에 제공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하고 비용효율 및 VFM 개선 등을 위하여 R&D를 해오고 있음
 - (스포츠 그래픽 시스템) 스포츠 그래픽 시스템 Piero 도입으로 선수들의 위치, 공격방향, 거리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서 가시적인 스포츠 중계를 가능하게 함
 - (iPlayer) 모바일, PC 콘솔 등에서 BBC의 영상을 볼 수 있는 iPlayer 서비스 개발
 - (공공기술 활용) 방송업계 전용 기술 대신 범용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확대재생산이 쉬움

(13) 우편 및 통신업

○ S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유무선통합서비스 및 유비쿼터스/컨버전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로 나뉘는데, 개인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의 비중이 높음
- (R&D) 이동통신 서비스가 현재는 5세대로 진화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지만 통화 품질 등 기존에 해오던 R&D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 다다랐으며 이에 따라서 서비스 R&D로 돌파구를 찾고자 함

V
부
록



자료: 장병열 외(2009)

- (HCI 프로세스) HCI(Human-Centered Innovation) 프로세스라는 정형화된 방법론에 입각해 서비스 산업의 R&D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의 → 발견 → 분석 및 종합 → 관념화 → 개발의 5단계로 이루어짐
- (신규 서비스 개발) 11번가 오픈마켓 서비스, 파자마 파이브(휴대폰 사용 시 친구의 기분 및 상태정보 제공), Q-메시지 서비스, 컬러링 서비스, 기프트콘 서비스 등이 있으며 HCI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었음

〈S사의 서비스 R&D 구현 사례 - 11번가〉

The diagram illustrates the implementation of service R&D at S Company (11번가) through three main sections:

- Chat-ping**:
 - "온라인 쇼핑처럼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할 수 없을까?" - 구매자
 - 쇼핑 중 고객간 제품을 통해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 쇼핑의 색다른 재미 제공
- Account Bar**:
 - "온라인 쇼핑 시 열어둔 물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없을까?" - 구매자
 - 고객이 들려온 상품이 자들으로 수집되어 쇼핑 중 쉽게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음
- The Street**:
 - "고객에게 Shop 이미지를 잘 노출하고 쉽게 찾기 오도록 하고 싶다." - 판매자
 - 해당 구역을 클릭하면 자세한 지도가 나오도록
 -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업체 판매자는 자기만의 Shop을 갖고 구매자는 거리의 이미지를 따라 Shop을 걸어

자료: 장병열 외(2009)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S사 예시(장병열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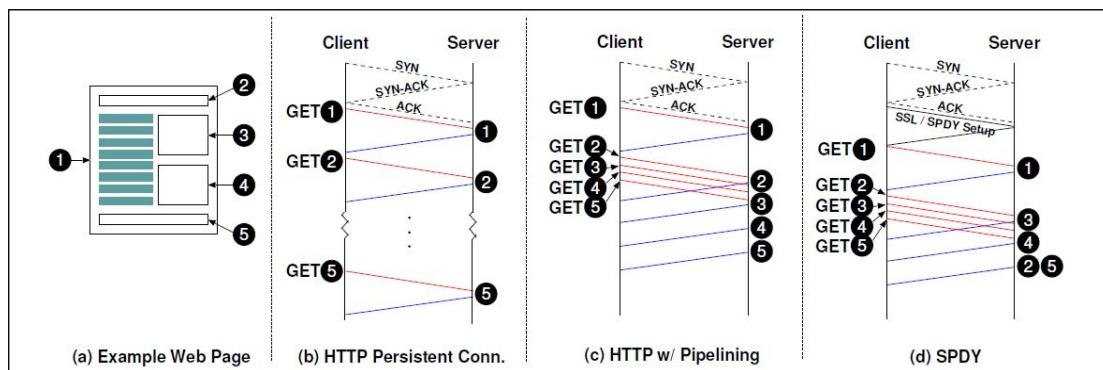
- (서비스) S그룹 계열사 및 공공, 금융, 제조분야의 고객을 중심으로 컨설팅, 시스템 통합, IT 아웃소싱, IT 인프라 관리,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사회간접자본구축 등의 서비스 제공
- (R&D) IT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인 IT 서비스 가치 설정, IT 서비스 품질 확보,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보 및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R&D에 전념함
- (사내 업무의 표준화)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모든 업무를 19개의 메가 프로세스와 133개 세부 프로세스로 분류하여서 서비스의 표준 프로세스를 개발
- (서비스의 상품화 및 표준화)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서비스 라인을 개발하여서 업종 공통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를 구분하여서 서비스의 수명주기를 관리함

(15) 정보서비스업

○ G사 예시(김평수, 2019)

- (서비스) 검색 엔진, 동영상 플랫폼, 웹브라우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R&D) G사는 현재 IT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중 하나이자 대부분의 서비스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반에는 인터넷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SPDY 프로토콜 개발) 초창기 HTTP/1.1 표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실험 프로토콜인 SPDY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기존 HTTP/1.1 표준을 내놓았던 기관을 동기부여 시켜서 더 진보된 표준인 HTTP/2 표준을 등장시켰음

〈HTTP와 SPDY의 작동방식 비교〉



자료: Erman et al.(2015)

V
부
록

- (인터넷 속도향상 기술 개발)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소켓을 열고 닫는데서 자원의 비효율이 생기고 이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TFO 기술을 개발하여 웹 콘텐츠의 전송속도를 증가시켰으며, 혼잡제어 알고리즘인 BBR을 개발해서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킴
- (모바일 콘텐츠 제작 편의성 증가) 전세계 기술파트너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AMP를 공개하여 기존 웹페이지보다 더 가벼운 형태의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모바일 콘텐츠 제작의 편의성을 증가시킴

○ K사 예시

- (서비스)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R&D) 챗봇, 스피커봇 등 AI기술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함
 - (K사 i 오픈빌더) K사의 AI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용 플랫폼으로 음성, 시각, 대화, 추천, 번역 등의 엔진으로 구성됨(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 개발자들은 이를 활용해서 CS상담이나 문의응대, 커머스, 주문/예약, 콘텐츠 제공 등의 챗봇을 쉽게 개발하고, 이러한 챗봇을 활용할 수 있기에 활용도도 높음

(16) 금융 및 보험

○ S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국내 949개, 해외 16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
- (R&D) 주로 영업지원그룹, 경영기획그룹, IT그룹 등에서 R&D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자사의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특허로 보호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R&D를 하고 있음
 - (비즈니스모델 특허)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PB 원격 거래서비스 등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를 취득하여서 타사가 K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해서 권리를 보호함

〈K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 현황〉

BM 특허명	주요내용
글로벌자금 관리서비스 (C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해외예금 계좌에 대해 자동으로 보상 이자를 지급하는 시스템 • 거래기업의 해외법인이나 지사들이 현지에서 예치한 예금과 대출을 합산한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이자를 보상
PB 원격거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투자상담을 받고 금융거래 가능
금리확정 모기지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기간을 설정 •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채울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
긴급출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카드가 없어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해두었다가 긴급상황시 인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ATM에서 현금 출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자료: 장병열 외(2009)

○ S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생명보험사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R&D) 경기침체와 신계약 성장의 둔화, 생계형 해약의 증가 등으로 인한 당기손의 감소 및 다양한 보험판매채널 등장으로 인한 맞춤형상품의 증가, 경영진의 의지 등이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주로 상품개발팀과 IT개발팀이 담당함
 - (퍼펙트종합보험) 2008년 9월에 출시한 상품으로 모든 보장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의

보험이며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 (원스톱 모바일 영업서비스)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부터 청약까지 보험가입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장 먼저 이러한 방식의 보험영업 시스템을 구축한데에 따른 신규계약 증가 및 방문횟수 증가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음

(17) 부동산업

○ S사 예시

- (서비스) 부동산 개발아이디어 도출, 사업타당성 검토, 수주, 금융 구조화, 상품설계/개발, 마케팅, 시공 후 운영관리 및 포스트마케팅 등의 종합 부동산 개발솔루션 제공
- (R&D) 친환경 건설기술, 공사현장 원격관리 시스템 PMIS 시스템 개발
 - (PMIS 시스템) 건설과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업무의 프로세스를 전자화하고 정보 및 자료를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과거 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인 업무공조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
 - 건축주가 직접 사업현장에 가지 않아도 조감도, 평면도, 계약정보, 공사현황 등을 알 수 있으며 공사일정도 확인할 수 있음

(18) 연구개발업

○ A사 예시(최병삼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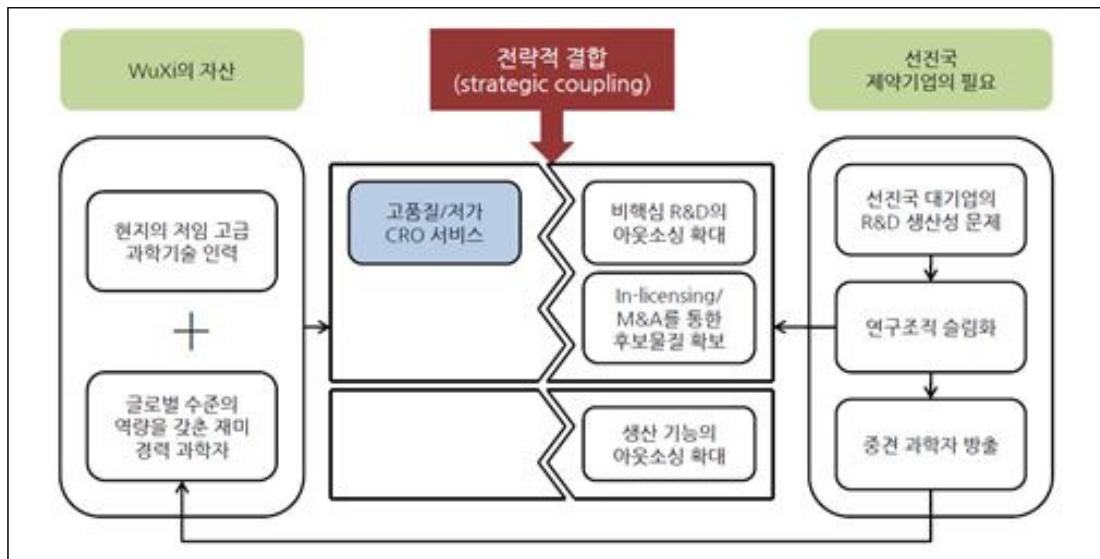
- (서비스) 스마트기기용 칩을 설계하고 이를 칩 제조사에 라이센싱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칩 제조사들에게 연간 100억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제품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칩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 한 대당 로열티를 받는 형식의 비즈니스모델 활용
- (R&D)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작동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모뎀의 핵심인 코어를 설계하며 이 코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퀄컴 등의 반도체 업체들이 프로세서를 만들고 완제품 제조사에게 공급함
- (RISC 방식 프로세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있는 RISC 방식의 프로세서를 개발, 독보적 방식의 저전력 설계기술을 활용하여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프로세서에 ARM 코어를 탑재시킴

○ W사 예시(최병삼 외, 2016)

- (서비스) 중국의 신약관련 기업으로 신약 발굴 및 개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물질 제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신약개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비용을 받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실험실과 인력 등을 임대해주는 Full-time equivalent 방식을 사용

- (R&D) 제약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서 고품질/저가 R&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미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가격에서 우위에 있음
- (FTE 프로그램) 일정규모의 인력이 하나의 고객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고객사의 연구개발을 연구진들을 활용해서 해주는 방식

〈W사의 서비스 R&D 전략〉



자료: 장병열 외(2009), 김석관(20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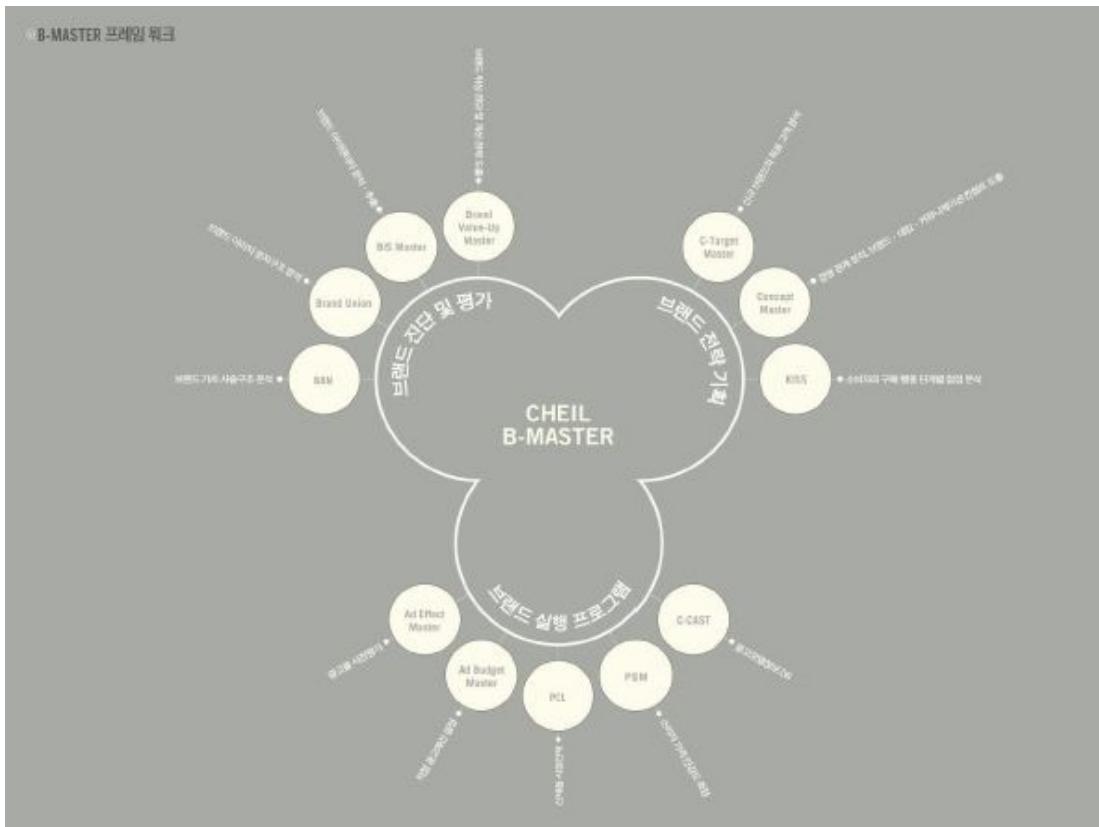
(19) 전문 서비스업

○ J사 예시(이은주 외, 2006)

- (서비스) 국내 최대의 광고대행사로 시장을 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음
- (R&D)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및 브랜드 전략 시스템, 미디어전략 연구소 설립 등
 -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광고의 타겟인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조사를 하여서 소비자 의식과 행동변화를 추적하는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브랜드 전략 시스템) 고객에게 브랜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파워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하는 브랜드 전략 시스템 (B-Master) 개발
 - (미디어 전략 연구소) 자체 미디어 관련 R&D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연구소를 발족, 정성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판매 예측모델, 매체별 광고효과 평가모델 등을 개발함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측정) 소비자의 미디어 사용과 라이프스타일간의 관계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여서 언제 어떤 미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광고효과를 측정함

〈J사 브랜드 전략시스템 B-Master〉



자료: 이은주 외(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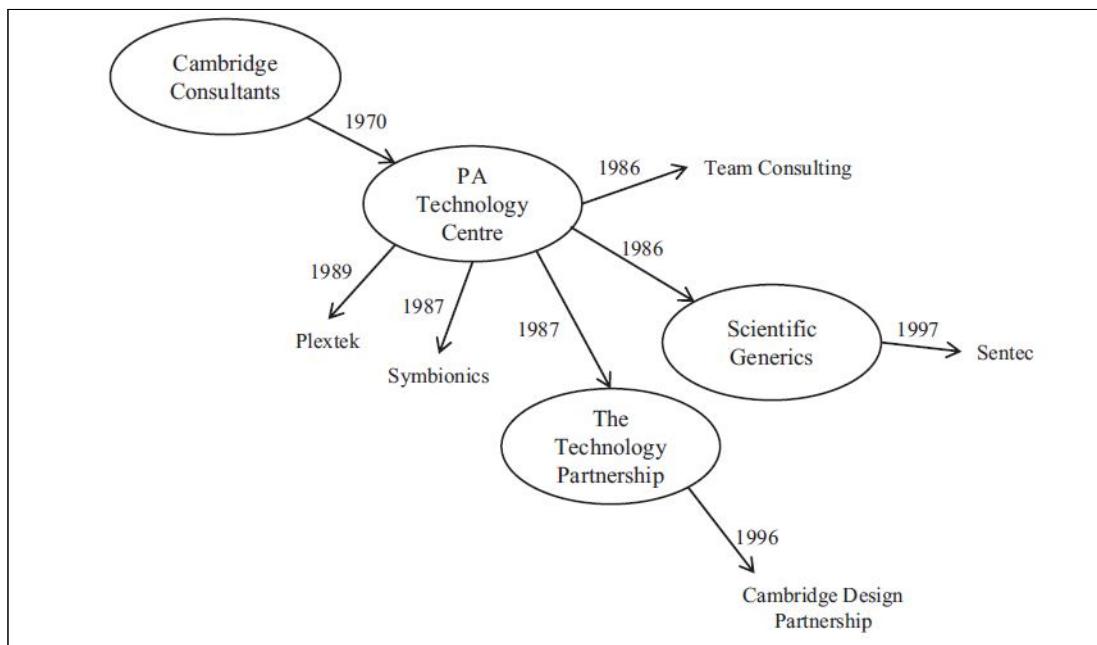
V
부
록

○ C사 예시(최병삼 외, 2016)

- (서비스) 영국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컨설팅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일용소비재, 통신, 헬스케어 등의 사업에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품질이나 환경 혁신을 컨설팅하는 혁신경영이 있으며 신제품 개발 및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기술경영자문이 있음
- (R&D)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제품개발과 기술자문을 제공
 - (인체중심 제품디자인 개발서비스) 휴먼팩터 연구 및 산업디자인 역량을 활용한 인체중심 제품 디자인 개발 서비스 제공

- (의학 경영 자문서비스) 약물전달시스템, 임상진단, 무선 의료와 관련된 의학기술 및 의학 경영 자문 서비스도 진행함

〈영국 캠브리지 지역의 기술경영 컨설팅업체 창업 경로〉



자료: 최병삼 외(2016), Probert et al.(2013) 재인용

○ S사 예시(최병삼 외, 2016)

- (서비스) 생명과학, 정보통신, 교육, 에너지, 국방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정부,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혁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R&D 라이센싱 및 벤처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혁신전략 및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R&D) 산학연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기획부터 기술사업화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60개가 넘는 벤처회사를 분사한 경력이 있음
 - (공공기관 자문활동)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교육, R&D, 중소기업육성,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자문 제공
 - (일반기업 대상 자문활동) 기업을 대상으로는 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 IP 사업화, 연구재원 분배, 혁신생태계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
 - (벤처회사 분사) Superflex 등 세계적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을 분사시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Superflex 웨어러블 로보틱스〉



자료: 장병열 외(2016)

(2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H사 예시

- (서비스)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플랜트 사업, 건축 사업, 인프라 및 투자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공플랜트, 전력플랜트, 주택건축, 산업단지 및 항만단지 인프라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
- (R&D) 모듈러 건축, 초고층 압송용 파이프, 저발열시멘트 등
 - (모듈러 건축)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에 설치 및 마감하는 공법으로 공장 생산을 통한 표준화로 업무시간 단축 및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는 건설 기술
 - 국내 최초 철골 모듈러 시스템 중 내진성능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하였으며, 단위유닛 경량화 및 철골물량의 감소로 인한 효율적 건축을 가능하게 함
 - (초고층 압송용 파이프) 초고층 콘크리트 압송을 위한 내압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파이프로 타사 대비 인장강도 및 경도가 뛰어나며 원가 또한 절감할 수 있는 파이프 개발
 - (저발열시멘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화열 저감 방안 개발이 목적으로 수화열 발생의 원인인 시멘트의 발열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화열을 제어할 수 있는 시멘트 개발, 초기강도 발현율과 균열저항성을 높임

(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A사 예시(김용연, 2012)

- (서비스) 캐릭터 디자인 전문기업으로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완구를 상품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며,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센싱 및 머천다이징 서비스 제공
- (R&D)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장을 리딩하는 캐릭터 개발 및 머천다이징
 - (시장 트렌드 분석) 연구개발인력이 약 40%에 달하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등에 있는 리서치센터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방식 및 트렌드를 분석, 이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함
 - (캐릭터 개발) 리서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지구환경보호'라는 이슈에 착안하여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모델로 착안한 '유후와 친구들' 개발

(2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S사 예시

- (서비스)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해충과 바이러스, 전염성 유해세균 등에 대해 위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R&D) 해충연구, 미생물연구, 식품안전연구, 약제연구, 위생시스템연구 등
 - (해충연구) 곤충관에서 100여종의 해충을 사육, 생태와 습성을 파악하고 효과적 퇴치법을 연구함
 - (미생물연구) 해충이 전파하는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대한 연구, 식품제조 및 조리환경 청결 상태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 연구
 - (약제연구) 해충의 퇴치를 위한 친환경 약제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한 살충제 연구
 - (위생시스템연구) 살균기법 연구, 식품안전기준을 반영한 식품안전서비스 개발 및 업종별 위생트렌드 연구, 친환경 방제방법 연구

(23) 사업지원 서비스업

○ M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전국에 32개 직영영업소와 지점을 두고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며 본래 해외여행상품을 기획, 전국의 중소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체에게 공급하고 영업을 지원하는 도매 여행업을 수행하지만 최근에는 직접 여행상품을 제공하기도 함
- (R&D)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개인 고객들이 M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확산되었고, 직접 거래를 위한 채널구축을 위하여 R&D를 진행함
 - (온라인 영업 지원 서비스) 효율적 영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M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결된 여행소매업체에게 예약 현황과 고객의 니즈 전달 등을 위한 온라인 영업 지원 서비스를 개발

- (신규 사업모델 개발) BtoB나 BtoBtoC와 같은 기존 판매처와는 다른 인터넷 사업모델을 확대 및 개발

(24) 임대업

○ S사 예시

- (서비스) 물류용 재사용 박스 대여업
- (R&D) 기존의 컨테이너박스 혹은 일회용 포장인 골판지나 목재 박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T-Box를 개발함
- (T-Box) 회수 물류비용 감소 및 알루미늄을 활용한 내부제품 보호,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물류용 박스들과 차별화된 물류용 박스 개발

(25) 교육서비스

○ D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제공
- (R&D)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형태가 등장하면서 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약 20년간 민간 교육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음
- (교육연구소 서비스모델 연구) 대표적으로 교육서비스(수학, 영어, 학습지 등) 사업모델 연구, 교육산업 트렌드 연구 및 분석, 제품 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심리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각종 평가 시행 등을 통해 교육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효과성 증대에 대한 연구를 함

〈D사 교육연구소 서비스모델 연구내용〉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D사 영어교육 사업모델 수립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공교육 정책 변화, 영어사교육시장 동향 파악 • 영어교육모델 변화, 외고 입시 변화, 경쟁사 분석 연구 • 공부 및 영어학습영역 강화안(기본컨셉, 모델, 차별점 등)
D사 수학전략모델 (교과수학 학습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현황 • 수학 고객의 이탈 사유 및 스위칭 현황 • 교과수학 학습에 대한 needs 도출과 컨셉안 제시
눈높이 전자학습지 파일럿 실행에 따른 교수학습모델 및 학습효과 검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결과 학습량이 일정정도 증가하고, 집중력이 높아짐 • 진도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흥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눈높이와의 차별화방안, 디지털의 장점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안
IPTV 이용자 특성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한 T러닝 콘텐츠 방향 도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TV 기반 학습인 T-Learning에 대한 이론연구를 통해 T-Learning의 성장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 IPTV 이용자 특성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해 IPTV 교육 콘텐츠 방향 도출

자료: 장병열 외(2009)

〈D사 교육연구소 서비스 혁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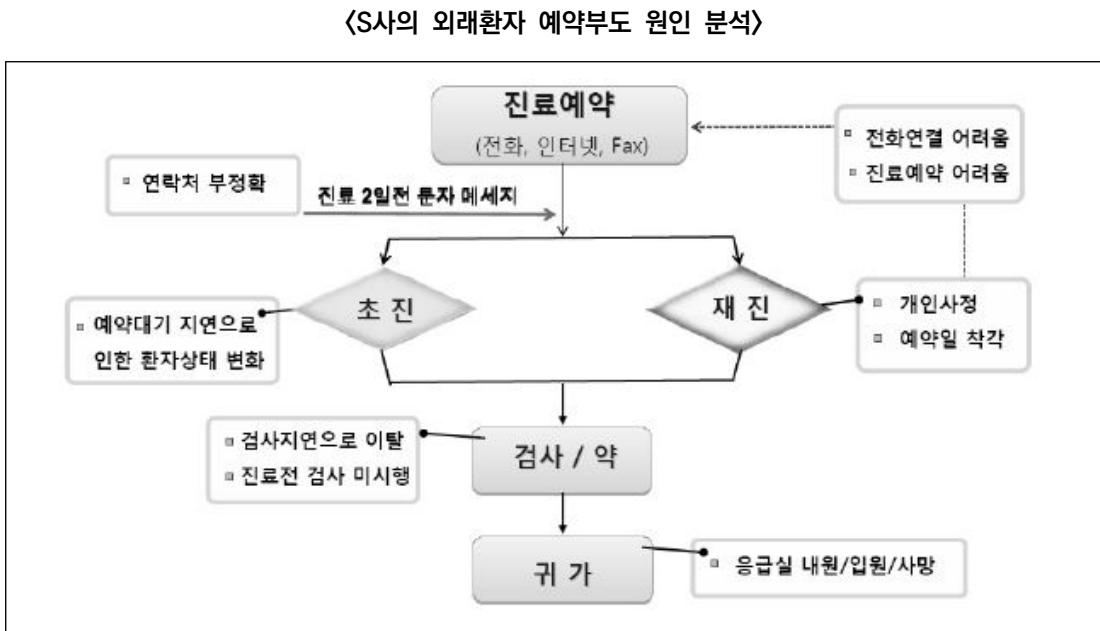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고객맞춤 회원관리 현장 적용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맞춤 서비스 길잡이' 현장적용 연구 시행(강서본부 / 화곡교육국) • 신임교사교육 및 팀장 교육에 적용 제안
눈높이교사의 업무성과 분석을 통한 자사의 효과적인 교육팀장 리더십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목표지향/관계지향적 리더십)에 따른 눈높이 교사의 업무 성과(입회율, 휴회율, 순증류) 비교 • 자사 눈높이교사의 특수한 상황(여성중심, 개인사업자)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팀장 리더십 제안
러닝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닝센터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론정리 및 관련 학습효과 제시 • 러닝센터 내/외부 고객(교사, 회원, 학부모)의 니즈조사와 유사 경쟁업체의 운영현황 조사를 통한 자사 눈높이러닝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시

자료: 장병열 외(2009)

(26) 보건업

○ S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일평균 7,800명의 외래 환자수를 가진 종합병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 (R&D) 외래진료 예약 후 대기 만족도가 저하되고, 외래 예약 부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예약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비스 R&D에 투자함
- (예약 프로세스 개선) 부정확한 연락처, 예약대기 지연으로 인한 초진환자의 상태 변화, 개인사정 혹은 예약일 착각, 검사지연으로 인한 이탈 등의 예약부도 원인을 발견하고 외래 진료 예약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초진부도율과 총 부도율이 감소함



자료: 장병열 외(2009)

○ B사 예시(장병열 외, 2009)

-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제공
- (R&D) 동일한 질병인에도 불구하고 환자 간 입원일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를 발견함
 - (표준 진료 일정관리) 입원 후에 행해지던 기초 병리검사를 입원 전에 실시하고 외과 수술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가장 많이 행해지는 8개 수술에 대해서는 표준 진료 일정관리(Clinical Path)를 개발하여서 입원일의 편차를 줄였음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 H사 예시(박정수 외, 2014)

- (서비스) 정서심리적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종합 진단하고 관련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서심리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대상 매출이 많았으나 현재는 비 바우처 매출도 40% 수준까지 올라옴
- (R&D) 다양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하나로 융합하는 소비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소비자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 대부분 심리치료가 미술, 언어, 음악치료 등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반면에 H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융합해서 소비자 맞춤형 정서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분야의 석·박사급 인력을 대학에서 원활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등에 7개 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대상 콘텐츠도 개발하고자 함

(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연예기획사(박정수 외, 2014)

- (서비스) 가수 뮤직비디오 및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 (R&D)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맞춤형 서비스 연구
 - (해외 소비자 수요 연구) 외국 팬들의 반응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외국 아티스트 등과 협업하며 이에 기반 하여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글로벌 프로모션 등과 같은 콘텐츠 제작시스템을 구축

○ 예술의전당(박정수 외, 2014)

- (서비스) 영상 및 공연관람 서비스 제공
- (R&D) 예술의전당 콘텐츠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사업 구상
 - (콘텐츠 영상화 사업) CJ E&M 등과 제휴해서 오페라, 연극, 무용 등 우수 예술 콘텐츠를 생중계 혹은 녹화물로 영상화하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영상화 사업을 진행하며, CJ는 영상화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예술의전당은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공연의 영상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 참고문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 서비스 산업의 R&D 활동 활성화 방안(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서비스 산업의 R&D 활동 추진 종합계획.
- 김석관 외(2014),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한국 제약산업의 추격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승민·고대영(2018),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 분석 및 발전 방향, 산업연구원.
- 김용연(2012), 한국 완구기업의 글로벌브랜드 전략,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구유리(2018), 출판산업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출판 사례 비교 연구: 서비스디자인 Co-creation 을 중심으로,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 157-160.
- 김평수(2019), 인터넷 서비스 향상을 위한 Google의 연구 개발 분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4(2), 288-298.
- 박정수·김홍석·조현승·김천곤·김숙경·이상호(2014),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창조성 활용 전략, 산업연구원.
- 이은경(2011),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프로세스 혁신에 관한 연구-Zara의 알고리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문화학회지, 17(3), 641-651.
- 이은주·유창조·한상린(2006), 통합적 브랜드 전략과 창의적 미디어 솔루션을 조화시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선도기업. ASIA MARKETING JOURNAL, 8(3), 123-139.
- 장병열·김수정·강희종(2009),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R&D 활동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조준상(2011), 프랜차이즈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Korea Business Review, 14(3), 215-250.
- 최병삼·박찬수·우청원·이성원(2016), 연구개발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최지선·김형진(2010), 게임산업 선도기업의 혁신역량 분석과 시사점,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0(5), 51-6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a), 비대면 유망기술 및 적용 사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b),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2020년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c), 일본의 산업기술 비전 202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d), 주요국의 연구개발전략 분석: 유럽연합(EU)·영국·독일·프랑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e),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영국 BBC의 R&D 활동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리뷰리포트.

5

보전산지 전용 추천

❖ 산지의 구분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함

〈산지에 대한 정의(산지관리법 제2조)〉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나.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라.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 보전산지의 전용

-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기업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전용가능(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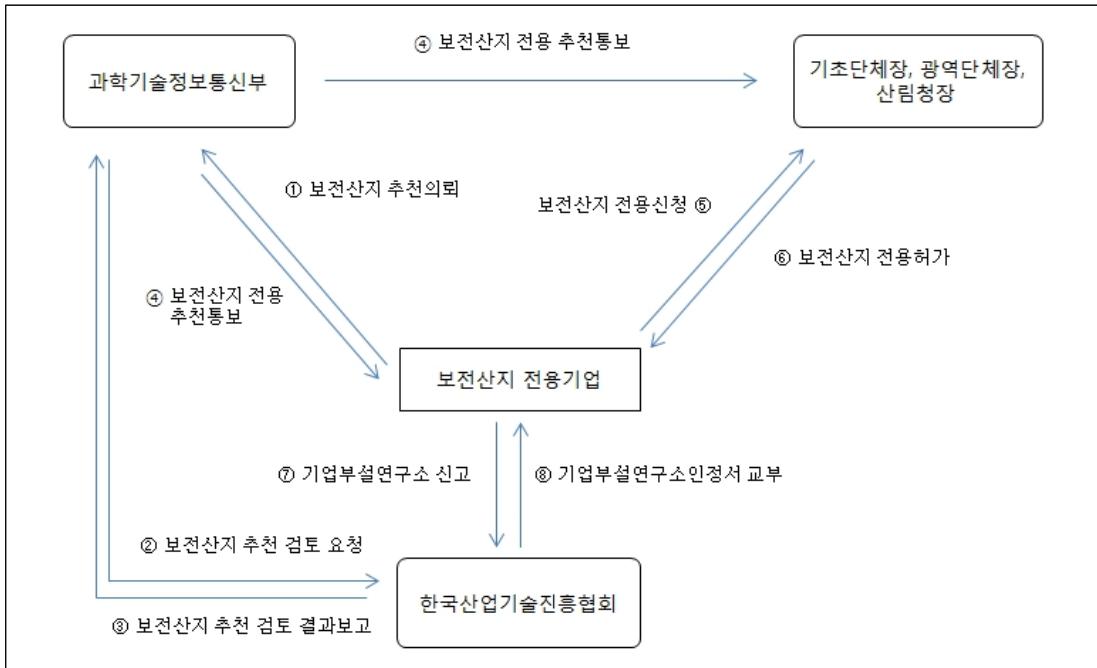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 제1호〉

- ⑨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09.11.26., 2013.3.23., 2014.12.31., 2016.9.22., 2016.12.30., 2017.7.26., 2018.4.17.〉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보전산지 전용 절차



① 보전산지 추천의뢰: 기업

- 첨부서류: 연구소 신축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사용승락서 등

* 연구소 신축계획서에는 회사개요(기업 및 연구소 현황, 연구개발활동 실적), 연구개발 전략(연구개발 필요성 및 계획), 연구소 운영계획(연구소 신축계획 및 연구소 신축에 따른 연구인력 충원계획, 연구개발 투자 계획), 기타(위치선정의 적정성(보존산지내 위치 필요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관련 대비책, 환경보전 대책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첨부도면: 현장사진, 위치도(1/25,000), 지적도(1/3,000), 세부조성계획도(1/3,000) 등

② 보전산지 추천 검토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으로부터 보전산지 전용 추천의뢰 요청을 접수하면 산기협에 보전산지 추천에 대한 검토를 요청

③ 보전산지 추천 검토 결과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의 보전산지 추천의뢰서류를 검토(추천의뢰서 서류 구비, 적정성 여부)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 추천검토위원회를 구성(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산림·환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등 5인 내외)하고 연구소 설립의 타당성, 연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립 관련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결과 통지

④ 보전산지 전용 추천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종 검토 결과 추천승인으로 결정되면 지자체 및 신청기업에 추천통보

❖ 추천검토위원회 구성

-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산림·환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보전산지 전용 추천검토위원회 검토표

검토항목	세부검토항목	검토의견
연구소 설립의 타당성	• 연구소 건립 필요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위치 선정의 적정성(보전산지 내 위치 필요성) 등	
	• 보전산지 전용 면적 적정성	
연구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 기업의 연구 실적 및 발전가능성	
	• 연구 계획의 적정성 및 전략의 적정성	
	• 연구 인력 충원 계획의 적정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투자 계획 적정성	
연구소 설립 관련 환경영향 등	•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관련 대비책 마련	
	• 보전산지 내 연구소 신축에 따른 환경 보전 대책	
	• 건축 허가 관련 서류 적정성 여부	
종합의견		
추천여부	추천(<input type="checkbox"/>) / 비추천(<input type="checkbox"/>)	

四

검토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원장 (서명)

V
부
록

기업부설연구소 보전산지 전용 추천요청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추천의뢰서				
신청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예정 소재지				
전용 신청 면적 (m ²)				
전용 필요성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보전산지 전용 추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 표:				
첨부서류	첨부도면			
1. 연구소 신축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사용승락서	1. 현황사진 2. 위치도(1/25,000) 3. 지적평면도(1/3,000) 4. 세부조성계획도(1/3,000)			

6 주요지원제도

〈연구소/전담부서 주요지원제도 요약〉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p>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p>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p>*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참조</p>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p>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p>*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2] 참조</p>	○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p>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10%(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를 추가공제(기본 공제금액의 2배 한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액×(1~10%)]+추가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 금액-3년 연평균 투자액)×3%]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p>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 35%,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p> <p>*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대상기</p>	○	×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부서
		술이 같은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각각 10% 추가공제 가능		
조세지원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
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
인력지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
인력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자금지원	우수기업연구소육성 (ATC+)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사업신청자격 부여)	○	×
기타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산지관리법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	×
기타지원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기타지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기간제법 제4조) <고용노동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인정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원제도는 법률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개요 :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일몰기간 없이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상의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times 25\%$ *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 $\times 50\%$
 -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 15%, 이후 2년간 : 1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times 8\%$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 $\times 40\%$
 -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times (0\sim 2\%)^*$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 $\times 25\%$
 - * 공제율(%)=(일반 연구·인력개발비/수입금액) $\times 50\%$ (단, 공제율의 한도는 2%까지임)
- 증가발생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보다 적은 경우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제144조)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 6])

구분	비용
1. 연구 개발	<p>가. 자체연구개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만약,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 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p>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p>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p> <p>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p> <p>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p> <p>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p> <p>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원 진단기관의 특허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구분	비용
2. 인력 개발	<p>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p>나.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p> <p>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p> <p>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p>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개요 :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7]상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자의 인건비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등
-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 당해연도 발생액 × (30%+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 : 당해연도 발생액 × (25%+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 × (20%+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특이사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함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외 공통비용의 경우 해당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함
- 적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3)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개요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7의2]상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등
-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 X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 대·중견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 X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 특이사항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함
- 적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4) 통합투자세액공제

- 개요 : 내국인이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적용범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연구시험용 시설(운영 중인 것 제외)
 -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자산
- 공제세액
 - 일반시설 : 당해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 당해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국가전략기술 시설 : 당해 설비투자금액 ×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대기업 6%)
 - * 추가공제 : (해당 과제연도 투자금액 - 직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 3%
-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여타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27조)
 -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타의 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127조)
- 신청절차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개요 :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취득한 후 1년 이내(신축·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2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부동산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직접사용에 한함)
 - 과세시점에서 요건미비로 과세되어도 사후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기과세된 취득세는 취소(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없음)

○ 면제세제 : 취득세 및 재산세

- 대·증견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코스닥상장증견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
- 중소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취득세 60%, 재산세 50%)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씩 추가 감면

○ 특이사항

- 연구소를 설치* 한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 * '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의미함
-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 적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감면대상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6)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개요 :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적용범위
 -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 비과세 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원 한도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관할세무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7)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개요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적용범위물품
 - 매년 품목 조정에 의해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감면비율 : 관세액의 80%
- 사후관리
 - 관세감면 물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음(단, 세관장 승인물품 제외)
 - 내용연수 5년 이상 물품 : 2년 / 4년인 물품 : 2년 / 3년 이하 물품 : 1년 이내
 -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적은 물품 : 1년 이내
 -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 : 1년 이내
- 신청절차 : 수입신고수리전(보통 수입신고시)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 (02)3460-9040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8) 전문연구요원제도

- 개요 :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학사)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지원대상
 - 병역 지정업체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지원내용

-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가능
 - 보충역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 가능

○ 지원절차

- 지정업체 신청원서 제출 : 매년 상반기(1월) / 하반기(6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매년 5, 12월에 설명회 개최)
- 선정 추천 : 매년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추천요령 : 지정업체 추천권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추천등급(A~J등급)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
- 선정 및 인원배정
 - 병무청장은 추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의 추천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상위등급)에 대해서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
 - 선정기간 : 매년 상반기(5월) / 하반기(11월)
 - 병무청장은 연구분야(자연계 기업, 대학, 방위산업 등)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등급을 고려하여 지정업체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차등 배정함(연구성과, 채용률, 관리상태 등 고려)
- 결과 통보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 선정여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함
 - 한편, 상반기(1월)에 신청하여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기존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신청기간 내에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통보해야 함
 - 미신청시 다음 연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02)3460-9140/91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044)202-4835/4839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 (042)481-2818

9)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 개요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지원인력
 - 이공계 학·硕·박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인력(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 지원인력 기준연봉의 50% 정부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硕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7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7797

V

부
록

1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 개요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지원대상
 - 지원인력
 - 이공계 학·硕·박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 연구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 중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72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7797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인 쇄 : 2022년 12월

발 행 : 2022년 12월

발 행 인 : 구 자 균

발 행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TEL : 국번없이 1379

FAX : 02-3460-9019

<http://www.koita.or.kr>

인 쇄 처 : 명진씨앤피 02-2164-3000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

